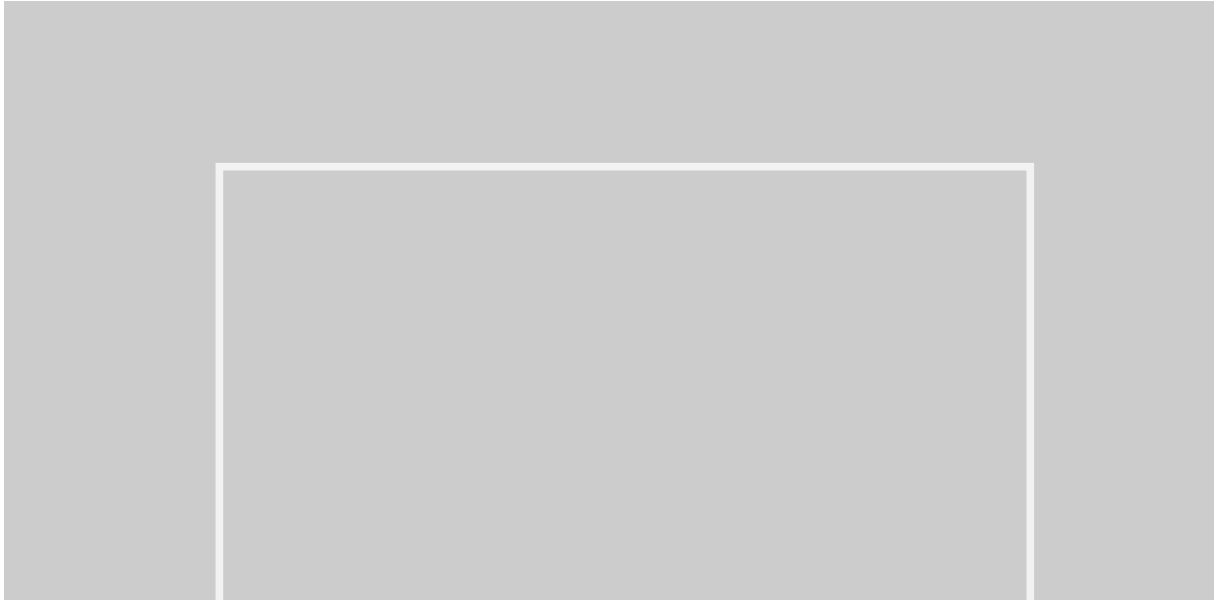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안]

2025. 12.



관계부처 합동



요약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 요약

1 추진배경

- (배경)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15년부터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주기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추진 중

구분	1차('15~'19)	2차('20~'24)
비전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목표	아동 행복도 증진 아동 최우선 원칙 기반 실현 조성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①교육·역량 강화, ②건강, ③안전, ④보호 아동 지원, ⑤아동정책 인프라·환경 조성	①아동권리 실현, ②균형있는 건강·발달, ③취약아동 국가책임 강화, ④코로나19 대응
주요 성과	아동수당 신설('18.9) 및 온종일 돌봄 도입('18),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19), 고교 무상교육 지원('19) 등	보호자 징계권 폐지('21.1), 부모급여 신설('23.1),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보호 출산제 도입('24.7) 등

☞ 지난 제2차 기본계획('20~'24)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새 정부 국정철학 반영한 범부처 아동정책 추진방향 마련 필요

* 아동정책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 포함(아동빈곤예방법)

2 추진경과

- '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23), '24년 제3차 기본계획 기초연구('24.4~'10)를 통해, 계획(안) 마련

- 제3차 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분야별 의견 수렴 및 과제 검토·보안('24.12~'25.6)

* 아동권리보장원장(위원장) 이하 복지·교육·의료·보호·권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주요 아동단체 및 아동 당사자(초등~고등학생), 언론계 등 총 33인으로 구성

-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제3차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8.8)
- 안전 사전 검토 및 관계부처 조정 등 위해, 아동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개최(9.30)

3 정책 평가 및 여건

□ 제2차 기본계획 평가 (요약)

- (주요 성과) 아동 권리보장 기반 마련, 아동 관련 인프라 확대, 아동 돌봄·보호체계 개선 등 제도적 기틀 마련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주요 성과 >

구분	주요 성과
아동 권리	아동정책영향평가 확대, 출생통보·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4.7.) 보호자의 '징계권 폐지'('21.1), 긍정양육원칙 수립('21.11) 등
건강·발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대, 전문상담교사 증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기준 강화 등
국가책임 강화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10), 방과 후 돌봄 확대 등
아동정책 혁신	돌봄 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 (한계)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은 60%*에 그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체감에 한계**

* 15개 지표 중 9개 지표 달성(삶의 만족도 등), 6개 지표 미달성(등교를 즐거워하는 비율 등)

**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돌봄비용 막대” 응답 88% (매경이코노미, '23.3)

▲‘징계권 폐지 인지 못해’ 응답 68%, ‘훈육 목적 체벌 가능’ 64.1%(세이브더칠드런 '23)

□ 정책 여건

- (총괄)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 수준 전반적으로 개선

* 아동 결핍지수: ('18) 31.5% → ('23) 17.6% ** 아동가구 빈곤율: ('15) 16% → ('20) 9.8%

- 단, 일반가구 대비 수급가구가 느끼는 상대적 격차 확대

* 일반가정 대비 수급가구의 결핍 지수: ('18) 약 2.2배 수준 → ('23) 약 3배 수준

- 나홀로아동 등 돌봄 사각지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 발생('25)

- (발달) 물리적 위험은 감소하였으나 디지털 과의존, 온라인 유해 정보 등 새로운 위험 증가하고, 건강 수준 및 여가 보장 악화
 - 스마트폰, SNS 등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은 심각한 수준
 - * 과의존 위험군 비율('24): 성인 22.4%('23. 대비 0.3%↓), 청소년 42.6%('23. 대비 2.5%↑)
 - 신체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
 - * 청소년(11~17세) 신체활동 실천율 기준, 146개국 가장 낮은 수준(Lancet, '20)
 - 비만율, 스트레스, 자살률 등 건강지표는 악화 추세
 - * 비만율: ('18) 3.4% → ('23) 14.3% ** 주관적 건강 수준: ('19) 70% → ('24) 66.1%
 - 사교육 증가 등으로 충분한 여가와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 * (아동의 방과 후 활동, '23) 친구와 놀기 : 희망42.9% ↔ 실제18.6%, 운동 : 희망19.7% ↔ 실제7.5%
 - 물리적 위험은 감소, 온라인 마약·도박 등 유해정보 위험 확대
 - * 10대 마약사범: 239명('19) → 649명('24, +172%, 대검찰청)
 - ** 사이버 도박 단속 결과 검거 인원(9,971명) 중 청소년은 47.2%(4,715명, '24.11, 경찰청)
- (보호) 보호대상 아동 수는 지속 감소, ADHD·경계선 지능 등 맞춤형 보호가 필요한 특수육구 아동은 증가
 - * 보호조치 아동 수: ('20) 4,120명 → ('22) 2,289명 → ('24) 1,978명
시설보호 아동 중 특수육구 아동은 41.9%(ADHD 23.9%, 경계선지능 18.3%, '24)
 - 아동학대 신고 규모 및 재학대 사례 비율은 증가 추세
 - * 아동학대 의심 건수 ('20) 3.9만 → ('24) 4.7만건 ** 재학대사례 비율: ('20) 11.9% → ('24) 15.9%
- (권리)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은 개선, 아동의 정책 참여 및 의견 표명 기회는 여전히 부족
 - * 아동 스스로 정책 참여기회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11% 불과('22, 청소년정책연)
- (예산) 아동 관련 예산(보육 포함) 지속 증가('18. 6.3조 → '24. 10.7조원),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 * GDP 대비 가족(아동) 대상 공공사회지출 비율: 1.5%(韓, '20) VS 2.1%(OECD, '15)

4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

목표

- ◆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 ◆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 ◆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

3대 추진 전략
·
10대 주요 과제
·
78개 세부 과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1. 기본 돌봄·양육환경 구현
2.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3. 아동이 마음껏 놀고 꿈꾸는 환경 보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2.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
3. 취약·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4. 아동보호 인프라 내실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1.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
2.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권익 보호
3. 정책 주체로서 아동 참여 확대

5 분야별 핵심 과제

1.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① 기본 돌봄·양육환경 구현

< 아동 양육기반 강화 >

-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26~)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 시, 가산급여 지급 추진
-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사업주 부담 완화, 유연근무 활성화 등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
 - * 자녀의 입원, 휴교, 방학 등 발생 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1~2주) 육아휴직 허용
- (부모교육 내실화) 부처별 분산된 부모교육 콘텐츠 연계 및 교육 제도화, 인식개선 등 통해 부모의 실질적 양육역량 강화('26~)

< 아동 돌봄체계 강화 >

- (나홀로아동 보호)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24시) 및 참여기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 마련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민간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추진
 - (틈새돌봄 확대) 아침·저녁·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틈새돌봄 운영 확대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추진
- (운동네 초등돌봄 도입) 지자체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 마련·확산('26~)하고, ^{가칭}운동네 돌봄·교육센터 지속 확충 추진
 - * ^{가칭}운동네 돌봄·교육센터 수 : '25년 58개 → '30년 300개 목표
- (방과 후 마을돌봄체계 개편) 브랜드 일원화를 통한 낙인효과 해소 및 일반아동 이용 촉진하되, 취약계층 이용 보장 및 지원기준 개선 추진

②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 아동 신체·정신건강 증진 >

-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 예방 교육·상담 확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민관 협력 통한 기업 자율조치안 마련,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 추진
* 연령별·과의존 수준별 특성 고려한 예방역량 교육과정 재설계(~'26),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 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추진
* ▲행동특성검사(3년 주기)·마음EASY검사(수사) 및 ▲마음바우처(진료치료비 지원) 운영 전문상담인력 확대 등
- (자살 예방 강화) 자살예방센터-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지원, 교육·상담 확대 및 학생 심리부검 시행 추진
-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틈새시간 활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
- (검진 통합·소아비만 예방) 학생 건강검사를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고 검진 결과 활용하여 소아비만 지원대상 발굴 및 예방·관리서비스 연계

< 소아 의료·예방접종 강화 >

- (미숙아 지원 강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확대 시행 하고('26~),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26~,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 추진
- (소아 의료체계 강화) 중증·응급·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추진
* 달빛어린이병원 확대(101→140개소, '30),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26~) 등
- (예방접종 지원 확대)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아동 연령을 점진적 확대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남성청소년까지 지원 확대

③ 아동이 마음껏 놀고 꿈꾸는 환경 조성

- (공교육 내실화)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확대 및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
- (문화·여가 접근성 제고) 꿈의 예술단 등 문화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아동친화적 문화시설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통한 체험활동 제공 등
- (유해정보 차단·대응) 디지털 성범죄,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신속 차단·예방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1]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 아동보호체계 강화 >

- (공적 입양체계 정착) 기존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관리 하에 공적 입양체계 도입(25.7) 및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추진
 - *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에서 국내외 입양 심의결정
- (가정위탁 활성화) 지역주도 가정위탁 사업을 국가단위 관리 추진 하고, 위탁가정 지원 및 전문위탁 확대,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 * 입전학, 진료, 휴대전화 개통, 계좌 개설 등 아동에 유리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 허용
- (후견제도 개선) 신속한 후견인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책임 강화하고, 전문적 후견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제 도입 추진
 - (원가정 복귀 지원) 초기 보호단계부터 광역 단위 가정형 보호 강화 및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지원 추진
- (시설아동 권익증진)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시설 투명성 제고·아동권리 강화 위해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추진
 - 전문서비스 강화 등 시설 기능전환·고도화 추진하고, ADHD·경계선 지능 등 특수육구아동 서비스 연계·진료 지원, 시설안전 강화 추진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

- (조기발견 및 예방 지원) AI 예측모형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강화하고, 학대 판단 前, 아동·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강화
 - * 양육코칭·상담 제공 및 가족기능 회복·의료비 등 지원(24. 400 가구 → '26 600가구)
- (재학대 방지·회복 지원) 가정의 기능 회복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하고, 지자체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 제공 추진
- (아동학대 환류체계 구축) '아동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 설치 등 통해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구체적·심층적 사례분석 추진

②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

- (드림스타트) 아동의 발달·환경 등 고려해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원
- (장애아동) 제도 접근성 개선*을 통해 발달장애 조기 발견·지원을 돕고, 장애아동 치료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 * (예) ▲방문 신청 한정 → 온라인 신청 지원 ▲보육시설 행정부담 경감지원 ▲보호자 상담교육 제공 등
- (경계선 지능아동)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교실-학교-학교 밖 3단계 안전망 제공을 통해 학습속도·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25.7~), 저소득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중위 65%, 월 23만원) 등 통해 안정적 양육지원
 -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완료 또는 진행중인 중위소득 150% 가구)
-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 자격 부여 연장(~’28.3월)하고, 실태조사 추진(‘26~) 및 출생등록제 도입 검토

③ 취약·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 (아동발달지원계좌 활성화) 기업 사회공헌 연계 등 후원모집 협력 체계 강화*하고, 가입률 제고 및 취약가구 납입률 저하 개선 검토
 - * ▲가칭사회공헌 플랫폼 연계·활용 추진 ▲아동과 1:1 결연 통한 적립금 지원(‘24. 95억원 모금) 등
- (자립준비청년) 고위험 사례 맞춤형 지원*을 도입하고, 경제적 자립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취업 가점 도입 검토
 - * 사회적 관계 단절 자살 고위험군 등 대상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전담인력 역량 강화 ▲기관간 협업연계 등

④ 아동보호 인프라 내실화

- (아동복지체계 강화) 직무분석·체계 개편 등 업무 효율화 추진하고, 고용 불안정·업무 과다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 인력 확충 검토
- (아동정보 통합체계 구축) 분산된 아동 관련 시스템·DB를 통합·연계하여, 일원화된 아동 정보관리 기반 구축 추진(‘26~)
-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자체·학교·기관별로 제공중인 아동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26.3~)

3.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 조성

①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

-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 주요 내용(안) : 아동의 권리, 국가·사회의 역할, 아동정책 추진체계, 국제협력 등
- (아동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운영 확대, 아동정책 영향평가 확대 시행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 아동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민·관협력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관리기준, 운영체계 등 제도화 및 지역 내 연계·협력 활성화
-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아동과 보호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및 정보제공 추진

②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권익 보호

- (제3선택의정서 비준) 아동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11년 채택) 비준 검토 추진
* (주요내용) 아동 권리침해 발생 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 직간접 통보(진정) 및 심의 후속조치 등
- (사법·행정절차상 권리보장) 사법절차상 아동의 의견표명권 확대, 아동보호 등 행정절차에서의 아동의 의견표명권 도입 추진

③ 정책 주체로서 아동 참여 확대

-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중앙부처·지자체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 개선 등 정책 영향평가 내실화
* (예시) 영향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대상 확대, 평가 결과 환류체계 정비 등
-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 참여 확대* 추진
* (예시) 아동복지법 상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 당사자 참여 의무화 등
- (아동 역량 강화)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디지털 역량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확대 추진

6 기대 효과

◆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 돌봄·양육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아동 삶의 만족도: ('23) 7.14점 → ('29) 7.8점, ▲여가활용 만족도: ('23) 50.3% → ('29) 55%

-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은 줄이고,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는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나홀로아동 보호 등

-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휴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 소아 의료체계 강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육활동 내실화, 공교육 내실화 등

◆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중심이 되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보호율: ('24) 46% → ('29) 52%, ▲재학대율: ('24) 8.7% → ('29) 8.1%

- 가정형 보호 원칙하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신속히 발견되어 필요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공적 입양체계 안착, 가정형 보호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 등

- 다양한 배경의 위기·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이 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 아동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24) 84.1% → ('29) 86%,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자체 개선이행율: ('24) 83.6% → ('29) 90%

-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정책의 중심이 되고, 아동 권익이 국제적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

-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아동 눈높이 정보 제공 등

- **(기본방향)**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해, 아동(가족) 정책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재원 투입 고려
 - 1.5% 수준('20)인 아동(가족) 대상 공공사회지출을 장기적으로 확대, '29년까지 OECD 평균 수준(2.1%, '15년)에 도달 노력

< GDP 대비 아동(가족) 대상 공공사회지출 현황 >

(단위 :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GDP 대비 가족(아동) 대상 공공사회지출	한국	0.7	1.1	1.5
	OECD 평균	2.2	2.1	-

* 출처 : OECD

- **(재정투입 계획)**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총 소요예산(78개 과제에 한함)은 약 35.7조원 수준(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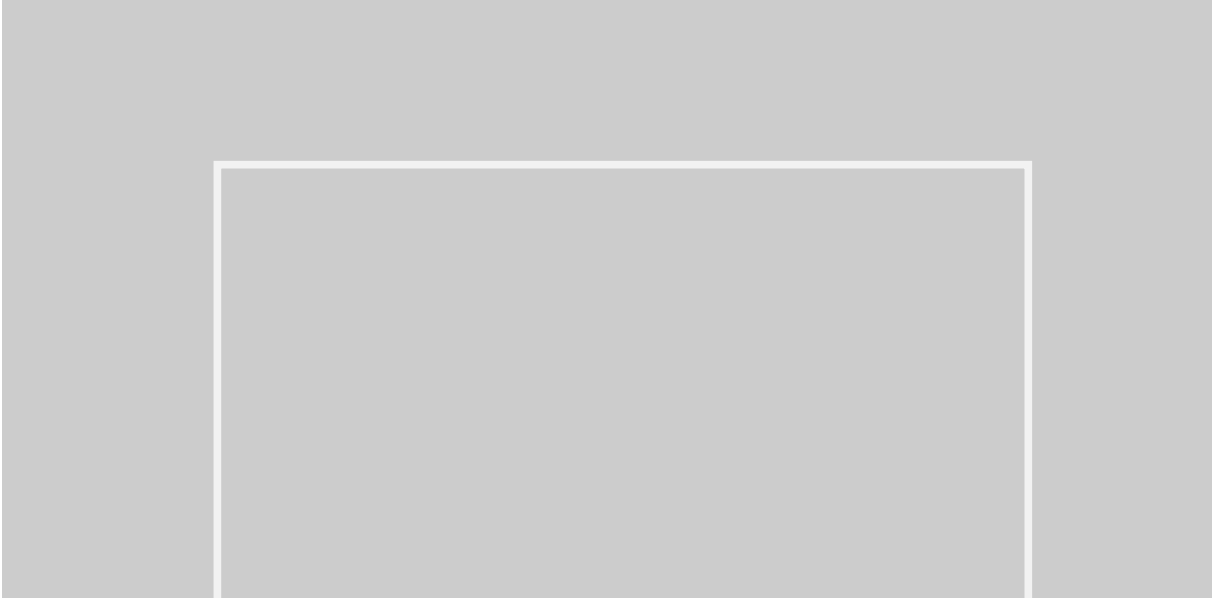
< 재정투입 계획(안)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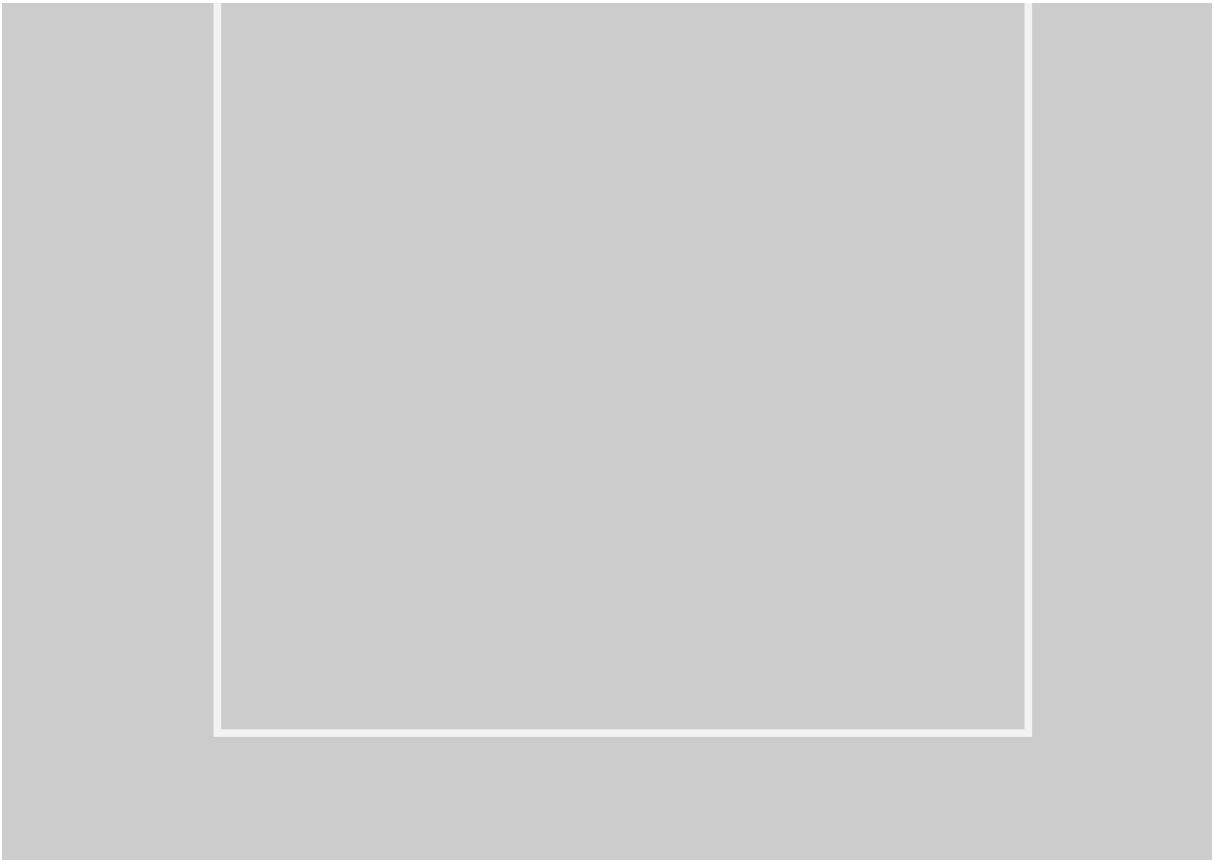
전략	총계	2025	2026 ~ 2029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320,389	53,743	266,646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36,807	6,888	29,919
아동의 권익 증진과 정책 참여 활성화	212	51	161
계	357,408	60,682	296,726

* 연차별 투입계획(안)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조달방안)** 매년 각 부처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안 마련 시 우선적으로 반영 등 검토



PH **PH**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그간의 정책 평가	3
III. 정책 여건	6
IV. 정책방향 및 전략	15
V. 분야별 추진과제	18
1.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18
2. 도움이 필요한 아동 국가책임 강화	31
3.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	44
VI. 기대효과	51
별첨 1 :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안)」	58
별첨 2 : 2023년·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	67

I 추진 배경

□ 수립 근거 및 주요 내용

○ **(수립 근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아동*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만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약 688만 명(주민등록 인구의 13.4%, '24)

- **(필요성)** 수백 건의 법정계획* 등으로 아동정책이 분절적으로 계획·집행되고 있어,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포괄적인 기본계획 필요

* 국가 법정계획은 총 639개(한국행정연구원, '22), 아동 관련 계획은 30여 개에 달함

- **(절차)**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위원장: 총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 정부위원 9인(교육·법무·행안·문체·산업·복지·노동·여가·예산처장관), 민간위원 15인

○ **(주요 내용)**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법으로 규정(법 제7조제2항)

※ 아동정책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 관련 내용 포함(제5호)

<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아동복지법 제7조) >

연번	주요내용
1	(제1호)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제2호)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제3호)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제4호) 자원조달방안
5	(제5호)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 개요(아동빈곤예방법 제6조) >

○ **(수립 취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을 위해 수립

*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아동, 한부모·다문화가족 아동(동법 제3조 제3호)

○ **(주요 내용)** 1.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주요 경과

- **(이전의 기본계획 등)**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 수립('15.5)
 - * 아동의 행복도 증진, 존중도 제고를 위한 4개 영역 11대 과제 제시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수립('20.8)
 - * 아동의 권리 존중 및 실현, 아동의 현재 행복을 위한 4대 추진전략, 9대 추진과제 제시
 - 「새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수립('23.4)
 - * 보편적 발달 지원, 취약 아동 집중지원, 아동의 의사 존중을 위한 3개 분야, 10개 과제 제시
- **(기초연구 등)**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기초연구 수행*
 -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아동권리보장원, '24.4~10)
 - **(자문위원회)** 기본계획 방향성 및 주요과제(안) 논의를 위해, 아동단체 및 당사자, 분야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24.12~'25.6)
 - * 정책 분야별 학계 전문가 및 주요 아동단체, 아동 당사자 등 총 33인으로 구성 '24.12월부터 '25.6월까지 총 6차례 자문위원회 회의(분과회의 포함) 개최
 - **(의견수렴)** 지자체 및 아동정책 관계부처 담당자 대상으로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및 보완(~'25.8)
 - **(공청회)** 대국민 의견수렴 위해,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25.8.8)
- **(심의·발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심의·발표 추진('25.11)
 - **(실무위원회)**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기본계획(안) 사전 검토 및 관계부처 조정 등 논의('25.9.30)
 - **(본회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개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심의·의결 및 발표(11.25. 예정)

II 그간의 정책 평가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아동의 권리 존중·실현, 현재 행복 증진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9개 중점 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 제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정책 방향 및 주요 내용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목표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
4대 추진 전략	권리주체 아동 권리 실현 ①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② 생활 속 아동 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③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④ 아동 신체와 정신건강 관리 강화 ⑤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⑥ 아동 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⑦ 저소득 가구 등 취약 아동 지원 강화
	코로나19대응 아동정책 혁신 ⑧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⑨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 주요 성과

- **(총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아동 관련 인프라 확대, 제도 도입·개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구분	주요 성과
아동 권리	아동정책영향평가 확대, 출생통보·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4.7.) 보호자의 '징계권 폐지'('21.1), 긍정양육원칙 수립('21.11) 등
건강·발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대, 전문상담교사 증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기준 강화 등
국가책임 강화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10), 방과 후 돌봄 확대 등
아동정책 혁신	돌봄 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 성과 평가

- **(성과 달성 여부)** 제2차 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률은 60%*에 그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체감에 한계

* 15개 지표 중 9개 지표 달성(삶의 만족도 등), 6개 지표 미달성(등교를 즐거워하는 비율 등)

- **(복지)** 전반적 생활 수준은 개선되었으나, 일반아동과 취약가구 아동의 격차는 확대*

* 일반가정 대비 수급가구의 결핍 지수: 2.2배(67%/30%, '18) → 3배(49.5%/16.5%, '23)

- **(발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대 등 아동 발달 관련 인프라는 개선*되었으며, 아동의 여가시간 만족도도 개선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대, 전문상담교사 증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기준 강화 등

- 그러나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등 건강지표는 악화*되었으며, 마약·도박·스마트폰 과의존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 증가

* 비만율: 3.4%(‘18) → 14.3%(‘23), 10대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5.8명(‘18) → 8.0명(‘24)

- **(보호체계 강화)** 제도개선 등 통해 아동보호체계는 강화*되었으나, 국민적 체감도는 부족한 수준**

*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10), 방과 후 돌봄 확대 등

**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돌봄비용 막대” 응답 88% (매경이코노미, ‘23.3)

- **(권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아동 존중을 위한 근본적 인식개선 지체**

* 아동정책영향평가 확대, 출생통보·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4.7.) ‘징계권 폐지’(‘21.1) 등

** ‘징계권 폐지 인지 못해’ 응답 68%, ‘훈육 목적 체벌 가능’ 64.1%(세이브더칠드런 ‘23)

- **(총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통해 인프라 확대 및 제도 기틀 마련 하였으나, 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 악화 및 정책 체감도 한계

* 코로나19에 따른 신체·정신건강 악화, 디지털 과의존 증가 등 새로운 위협요인 등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정리 >

연번	성과지표	당초('19)	목표('24)	성과('24)	달성 여부
1	(핵심) 삶의 만족도	6.57점('18)	7.0 ↑	7.14('23)	달성
2	UN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90% ↑	92.3%('23)	달성
3	(핵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77.1%('19)	80%	84.1%	달성
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77.3%('19)	80%	81%	달성
5	(핵심)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 아동·청소년	76.5%('19)	80%	72.4%	미달성
6	여가시간 만족도(13~19세)	43.3%('19)	47%	50.3%('23)	달성
7	주관적 건강 수준	70%('19)	73%	66.1%	미달성
8	영유아 건강검진율	74.5%('18)	82%	79%	미달성
9	어린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1명('16)	0.6명	0.3명('23)	달성
10	아동·청소년 전반적인 폭력 피해율	8.5%('18)	8.0%	22.6%	미달성
11	재학대사례 비율	10.3%('18)	7.7%	15.9%	미달성
12	(핵심) 공적아동보호체계 완비 (아동학대전담인력 배치율)	-	100%	117.3%('23) 897명(실적)	달성
13	가정위탁 보호율	23.9%('18)	37%	35.7%	미달성
14	공공보육 이용률	28.4%('19)	40%	43.1%	달성
15	아동결핍지수 ※ 전체 평균 지수는 1.58점	4.50점('18) (중위소득 50% 미만)	4.0점	2.09점('23)	달성

III 정책 여건

1 아동의 삶 현황 (객관적 지표)

□ [총괄] 전반적 생활 수준은 개선, 격차 지속 및 돌봄 사각지대 발생

○ (생활 수준) 삶의 만족도*, 물질적 환경** 등 생활 수준 전반적 개선

* 주관적으로 삶에 만족하는 정도, 6.5/10점('18) → 7.1/10점('23, 아동종합실태조사)

** 결핍 지수(식사 등 생활에 결핍이 있다는 아동의 응답, 14항목): 31.5%('18) → 17.6%('23)

- (아동 빈곤율) 아동 가구의 빈곤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 감소**

* 전체 아동 중 상대적 빈곤선(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의 비율

** 2015년 16.0% → 2020년 9.8%로 지속적 감소, OECD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

- 다만, 저소득 가정의 일부 지표는 악화*되는 등 격차 지속**

* 일반가정 대비 수급가구의 결핍 지수: 2.2배(67%/30%, '18) → 3배(49.5%/16.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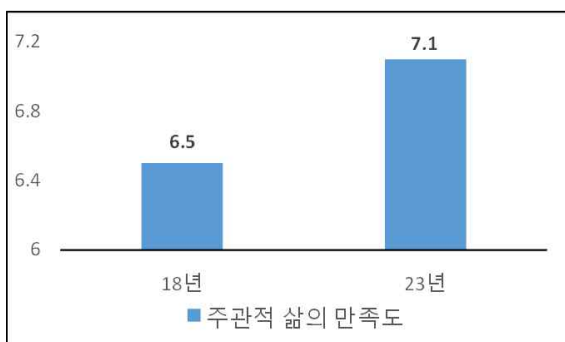
** 아동 가구의 생활 수준은 아동의 비만율(+), 학교생활 만족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24.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 (사회적 관계) 양육자와의 관계*, 친구 수** 등 사회적 관계는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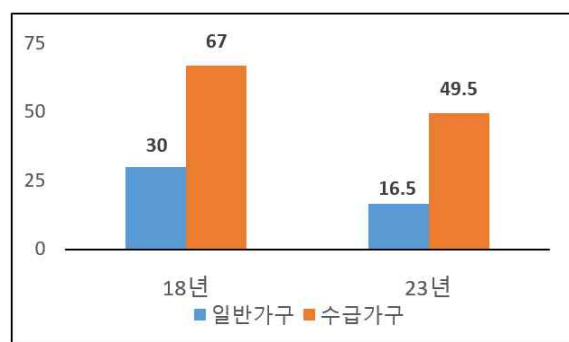
* 주양육자와의 관계(대화 등): 25.3/30점('18) → 26.4/30점('23, +4.3%)

** 9~17세 아동의 친구 수(본인 응답): 5.4명('18) → 8.2명('23, +51.9%)

주관적 삶의 만족도(점)



아동의 결핍 지수(%)



* 출처 : '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 (나홀로아동) 생계, 외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 부모가 가정을 비운 사이, 화재 등 사고로 돌봄 사각지대 아동 사망사건 발생

* ('25년 상반기) 인천 서구 12세 아동 화재 사망('25.2.26), 부산 부산진구 10세·7세 아동 화재 사망('25.6.24), 부산 기장군 8세·6세 아동 화재 사망('25.7.2)

□ **(발달) 디지털 과의존 증가 등 건강수준 악화, 사교육 증가 및 여가 부족**

○ **(디지털 과의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은 성인보다 매우 높으며*,
성인의 과의존은 감소하는 데 반해, 아동의 과의존은 심화**

* 과의존 위험군 비율: 성인 22.4%, 유아동 25.9%, 청소년 42.6%(‘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위험군 비율은 성인(20~59세) 0.3%p ↓, 유아동(3~9세) 0.9%p ↑, 청소년(10~19세) 2.5%p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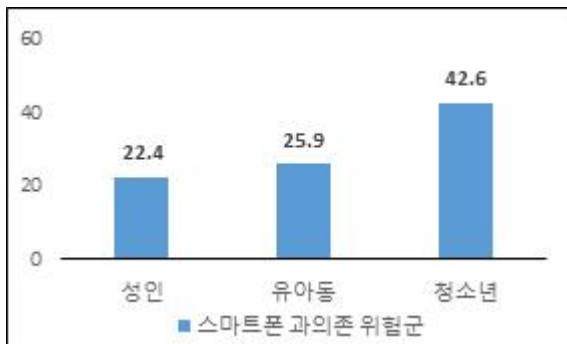
-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인보다 수면장애 등 경험률이 3.3배*에 이르며,
스마트폰 과다 이용은 스트레스,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

*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장애·피로 등 경험 위험군 54.9%, 일반 16.5%(‘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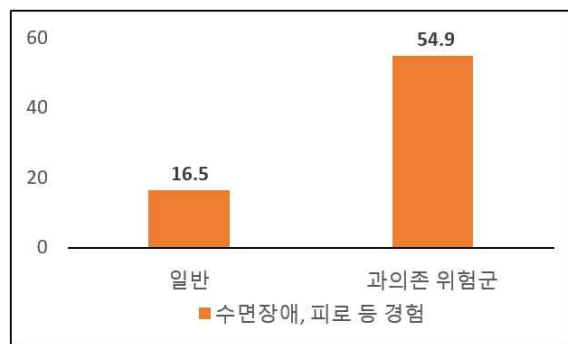
**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우울(+), 불안(+), 공격성(+) 등 심화(‘24.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어린이가 SNS, 휴대폰에 중독되어 사용시간이 증가할 경우, 자살 위험도 증가(美, 의사협회지)

※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SNS 중독으로 정신건강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Haidt, ‘24)
(英) 교내 휴대전화 제한 가이드라인(‘24)에 따라, 초등 99.8%, 중등 90%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24, NEU)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장애·피로 등 경험률(%)



* 출처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신체활동)** 우리나라 중·고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실천율은 큰 차이**를 보임

* 주 5회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 비율: 14.7%(‘19) → 17.3%(‘24,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 신체활동 실천율(최고값 / 최저값) : 중1 남학생(26.5%) / 고3 여학생(5.8%)

-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46개국 중 가장 낮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미국에 비해 30%p 낮은 수준

* 청소년(11-17세) 신체활동 실천율 기준(매일 60분 이상 중강도 이상 운동, Lancet, ‘20)

** 美 Youth Risk Behavior Survey(YRBS), 우리나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비교(질병청, ‘24)

- **(미숙아 증가)** 산모 출산연령 상승과 난임 시술 등에 따른 다태아 출산 증가로 **미숙아(조산아 및 저체중아)* 비중 동반 증가**

*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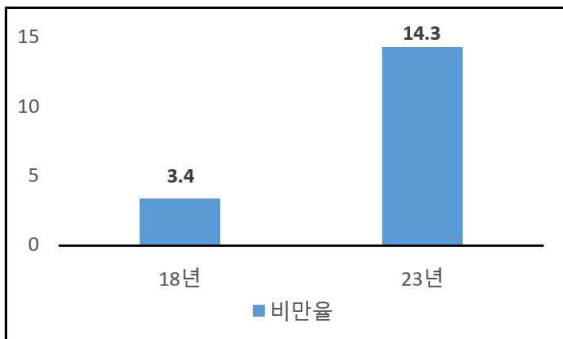
※ **(평균출산)** '14년 32.0세 → '23년 33.6세(+1.6세) **(고령산모 비중)** '14년 21.6% → '23년 36.3%(+14.7%p)
(조산아 비중) '14년 6.7% → '23년 9.9%(+3.2%p) **(저체중아 비중)** '14년 5.7% → '23년 7.7%(+2.0%p)

- **(건강지표 악화)** 비만율*, 스트레스, 자살률** 등 건강지표 악화

* 9~17세 아동 자가응답 비만율 : 3.4%('18) → 14.3%('23, 아동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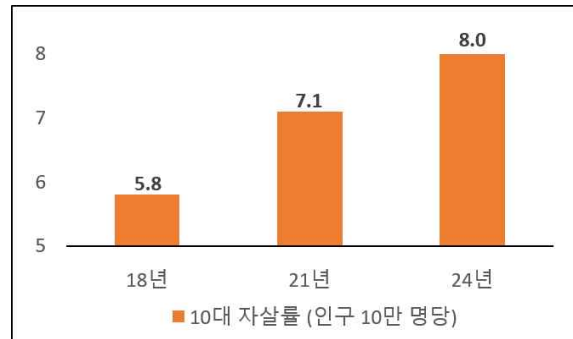
** 10대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5.8명('18) → 7.1명('21) → 8.0명('24, 데이터처)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



* 출처 : '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10대 자살률(%)



* 출처: 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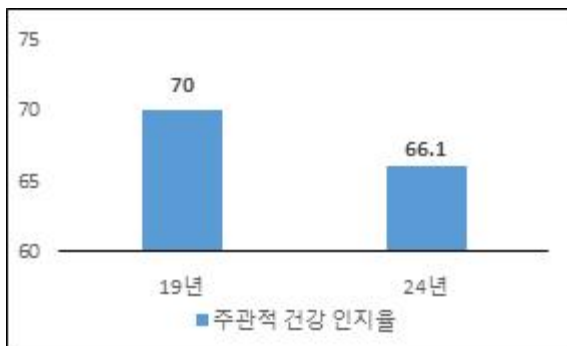
- **(주관적 건강)**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수준 역시 **악화***

*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 70%('19) → 66.1%('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특히,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 겪는 아동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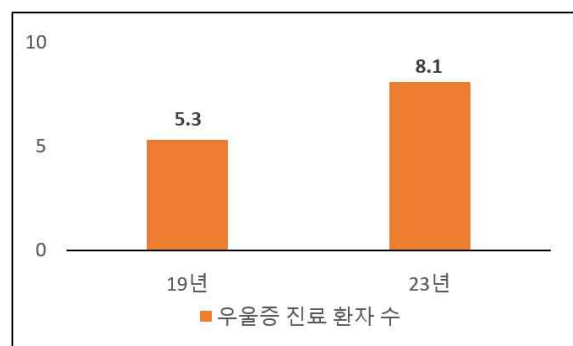
* 우울증 진료 환자 수(0~19세): 5.3만 명('19) → 8.1만 명('23, +53%, 심평원)

주관적 건강 인지율(%)



* 출처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우울증 진료 환자 수(0~19세,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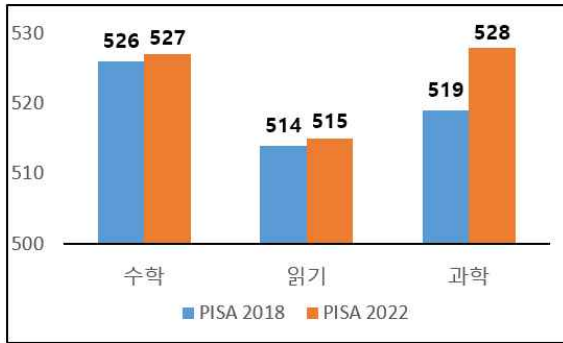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교육)** 학업성취도는 소폭 향상*되었으나 사교육비는 급증**

* '22년 OECD 평균 학업성취도는 '18년 대비 하락, 우리나라는 소폭 상승(PISA,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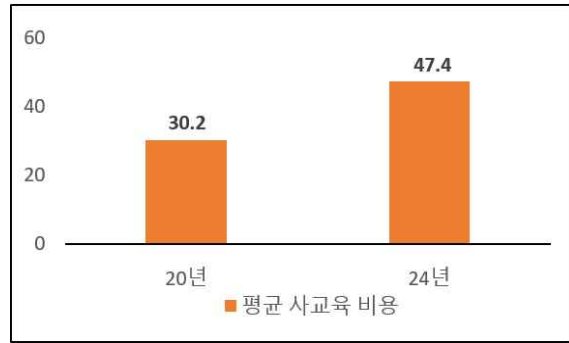
** 평균 사교육 비용: 월 30.2만 원('20) → 47.4만 원('24, +57.0%,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우리나라 평균 학업성취도(점수)



* 출처 : PISA

평균 사교육 비용(만 원)



* 출처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여가 생활)** 아동은 친구들과 놀기, 운동 등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교육 등으로 인해 충분한 여가를 보장받지 못함*

* 아동의 방과 후 활동('23): 친구와 놀기(희망 42.9% ↔ 실제 18.6%), 운동(희망 19.7% ↔ 실제 7.5%), 학원·과외(희망 25.2% ↔ 실제 54.0%), 숙제(희망 18.4% ↔ 실제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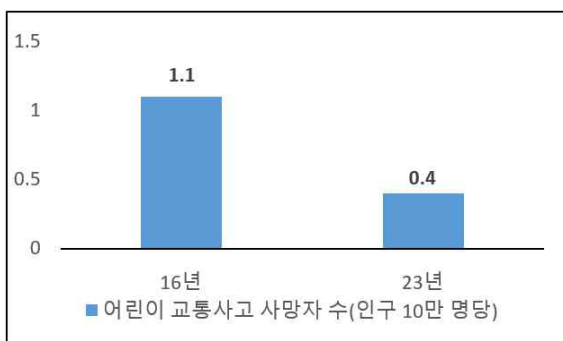
○ **(안전)** 아동의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등 물리적 위험은 감소, 마약**·도박*** 등 온라인 유해정보 접근 및 위험 확대

*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명('16) → 0.4명('23, 행정안전부)

** 10대 마약사범: 239명('19) → 649명('24, +172%, 대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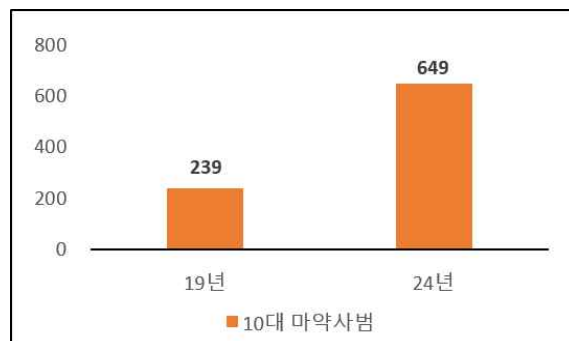
*** 사이버 도박 단속 결과 검거 인원(9,971명) 중 청소년은 47.2%(4,715명, '24.11, 경찰청)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 출처 : 행정안전부

10대 마약사범(명)



* 출처 : 대검찰청

□ **(보호) 취약 아동은 감소, 보호 수요는 증가**

○ **(취약아동 지원·보호)** 경계적으로 취약하거나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보호조치 등 복지제도 시행 중

* (약 38만명) 보호대상아동 2.1만명, 기초수급가구 아동 22만명, 차상위가구아동 4.4만명

- **(보호대상아동*)** 매년 신규 보호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특수육구 아동 증가에 따라 맞춤형 보호 수요 증가***

*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유기 등으로 원가정 양육이 곤란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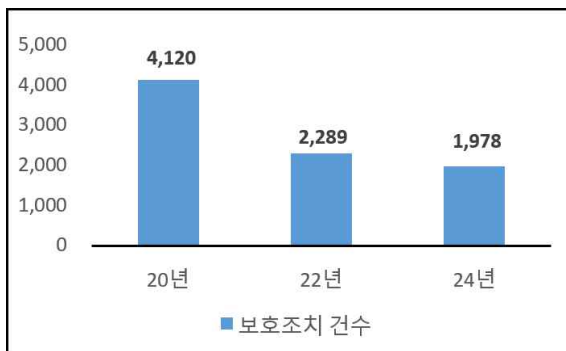
** 연도별 보호조치 수 : ('20) 4,120 → ('21) 3,437 → ('22) 2,289 → ('23) 2,054 → ('24) 1,978명

*** 시설보호 아동 중 ADHD(23.9%), 경계선지능(18.3%) 등 특수육구 아동이 41.9%('24)

- **(학대)** 아동학대 의심 건수, 재학대 사례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년 이후 연 30~50건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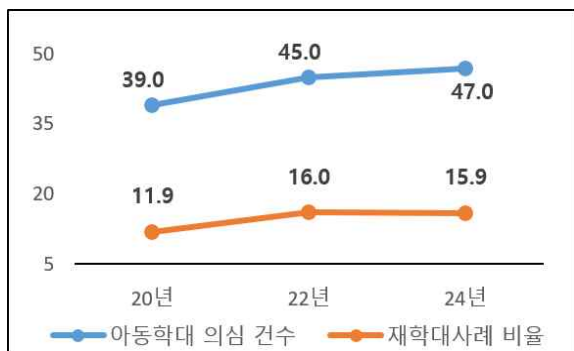
지표 종류	2020	2022	2024
아동학대 의심 건수(A)	3.9만 건	4.5만 건	4.7만 건
아동학대 판단 건수(B)	3.1만 건	2.8만 건	2.4만 건
재학대사례 비율(재학대 사례/B)	11.9%	16.0%	15.9%
아동학대 사망사건 건수	43	50	30

보호조치 건수(명)



*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의심 건수(천건) 및 재학대사례 비율(%)



* 출처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 인프라)** 취약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인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급여·근로 형태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사직 등 업무수행 능력 저하**

* (예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수: 334명(+334, '20) → 524명(+190, '21) → 715명(+191, '22~)

** (예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개월, 연평균 62명 사직

□ [존중] 사회적 인식은 개선, 아동 정책 참여는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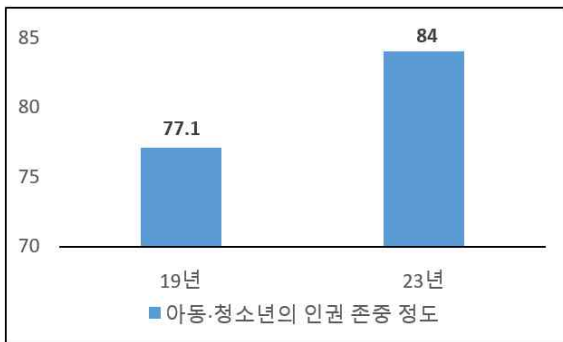
- (아동 존중)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19), 긍정양육원칙 수립('21.11) 등 아동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 전반적 사회적 인식은 개선*

*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도: 77.1%('19) → 84%('2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참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기회 제도화·홍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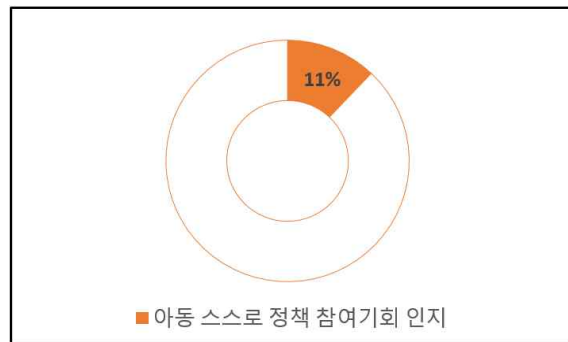
* 아동 스스로 정책 참여기회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 11%에 불과 ('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도(%)



* 출처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 스스로 정책 참여기회 인지 비율(%)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예산 등] 아동 예산은 증가,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 (관련 예산) 저출생 영향 등으로 아동이 감소*하는 가운데, 아동 관련 예산(보육예산 포함)은 증가**

* 전체 인구 중 아동 비율: ('18) 15.8%(818만명) → ('24) 13.4%(△2.4%p, 68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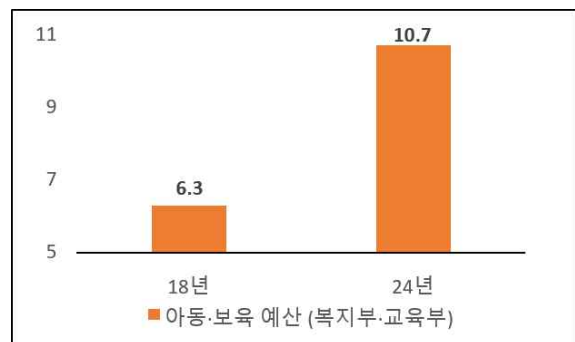
** 아동·보육 예산(복지부·교육부(보육) 소관): 6.3조원('18) → 10.7조원(연+9.3%, '24)

아동 수(18세 미만, 만명)



* 출처 : 데이터처

아동·보육 예산(조원)



* 출처 : 보건복지부등

- (지출 비중) OECD 평균 대비 가족(아동) 지출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

* GDP 대비 가족(아동) 대상 공공사회지출 비율: 1.5%(韓, '20) VS 2.1%(OECD, '15)

2

아동들이 바라는 아동정책 방향 (주관적 제안사항)

- **(수렴 방법)** 아동총회, 포럼, 기고문, 정책 제안문 등을 통해 아동의 정책건의(19,192건) 수렴('22.1~'24.11)
- **(주요 내용)** 의견수렴 결과 아동의 발달 지원, 아동보호 강화, 아동의 권리 존중 등의 건의가 다수
 - **(아동 발달 지원 등)** 신체활동시간 확보, 휴식 시간 확보, 돌봄여건 개선, 상담 접근성 개선 등의 발달 지원을 위한 건의가 다수

<김○○ 아동, 아동권리보장원 의견수렴, '24.9>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닌 가정에서 배우는 가정교육(인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들과 부모님, 대한민국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아동, 건강권 관련 아동보고서, 굿네이버스, '24>

저도, 제 친구들도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항상 모여앉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략)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아동, 아동권리포럼, 아동권리보장원, '24.11>

우리는 아직 성장기에 있기에 마음껏 활동하고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중략) 집에서는 소음 걱정 때문에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략)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길까봐 쉬는 시간엔 화장실 외에 복도로 나가는 것을 금지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동, 동아일보 기고, '24.4>

학기 초에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타인의 시선과 부끄러움 때문에 진실하게 체크해 상담까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조금 더 접근성이 쉬운 다양한 방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보호 강화)** 아동복지시설의 여건 개선,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아동보호 관련 건의 접수

<이○○ 아동, 아동정책공약제안서 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2>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살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같은 아동들을 위해 지원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 방에서 2~3명씩 살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이 없으니 한 곳에서 각자의 일을 해야 하고, 개인 사생활 보장도 없어요.

<김○○ 아동, 아동정책공약제안서 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2>

보육원 아동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지원금을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자립체험 프로그램이나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가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동, 제15회 아동권리포럼 토론문 중, 아동권리보장원, '24>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은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장애아동의 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중략)

<이○○ 자립준비청년, 제22차 아동복지포럼 토론문 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2>

제 주변에도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저처럼 정보가 부족해** 첫 번째 집을 구할 때 집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지 못하거나 입주하는 집의 안 좋은 부분을 알아채기가 힘들었다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조언을 구하거나 같이 집의 상태와 조건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 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돌봄 아동들의 의견 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4>

부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동생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나서 저도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돌봄 역할을 하다가 생기는 지각, 결석이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가족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곤하고, 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 **(아동 존중)** 노키즈존 증가에 대한 불만, 아동 의견수렴·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아동 존중에 대한 건의 접수

<박○○ 아동, 아동정책 공약 제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2>

요즘 엄마가 **유명한 카페라며 데려가는 곳마다 노키즈존이 너무 많아요.** (중략) 어린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된다고 자세히 교육도 해주고 부모님들이 잘 보호하면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슬퍼요.** (후략)

<전○○ 아동, 아동 참여 정책토론회, 굿네이버스, '24>

어른의 일에 어른이 가장 공감하듯이, 아동의 일은 아동이 가장 잘 압니다. 때문에 그에 따른 선택도 아동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을 위해 변화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른들의 의견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아동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아동이 스스로 참여권을 소중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최○○ 아동, 아동권리보장원 의견수렴, '24.9>

(지자체 등에서) **원하는 정책을 이루기 위해 (아동들이) 들러리로 서는게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터를 만든다. 하면, 사실 업체나 방향과 예산이 정해진 상황에서 의견수렴, 회의, 의견을 도출하다보니 결국 어른들이 정해놓은 판에 말처럼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은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가 상시 열려있어 행사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되도록 조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아동, 아동권리포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4.11>

아동은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정보가 거짓인지, 어떤 어플이 악성 어플인지, 무엇이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중략) 그렇기에 **디지털 환경 속 위험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1 아동 기본사회 실현

- (배경) 그간의 아동정책은 인프라 투자 및 제도 마련에 집중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환경 개선은 부족
- (추진방향) 모든 아동이 발달 단계별로 돌봄-의료-교육-여가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 실현
- (주요과제) 아동수당 확대 등 ▲보편적 양육지원 확대, 나홀로아동 지원,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 ▲아동 돌봄체계 강화, 지역 내 ▲신체·정신건강 증진 및 여가 보장 등

2 가정형 보호 강화

- (배경) 가정형 보호 원칙에도 여전히 상당수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 중이며 아동 수 감소, 아동 욕구 다변화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 필요
- (추진방향) 가정형 보호 원칙 하에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 가구·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주요과제) 가정위탁 공적체계 개편, 시·도 중심 원가정 복귀 지원 등 ▲가정형 보호 강화, 한부모가정,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 ▲가구·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

3 권리주체로서 아동 권리 강화

- (배경)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은 미흡하며, 정책 수립 및 사법·행정절차 상에서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 부족
- (추진방향)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강화 및 정책 참여 활성화, 아동 의견표명권 확대 추진
- (주요과제)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권리협약 제3차 선택의정서 비준 등 ▲아동 기본권 보장 강화, ▲정책 참여 활성화, 사법·행정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도입·확대 등

2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

목표

- ◆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 ◆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 ◆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

3대
추진
전략
·
10대
주요
과제
·
78개
세부
과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1. 기본 돌봄·양육환경 구현
2.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3. 아동이 마음껏 놀고 꿈꾸는 환경 보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2.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
3. 취약·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4. 아동보호 인프라 내실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1.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
2.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권익 보호
3. 정책 주체로서 아동 참여 확대

3

성과지표(안)

성과지표		2024년	2029년(목표)	출처	비고
총괄	핵심 삶의 만족도	7.14점('23)	7.8점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3년단위)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92.3%('23)	95%	복지부	UN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달·건강	핵심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인지율)	66.1%	68.5%	질병청	청소년건강 행태조사
	부모교육 참여율	(신규)	70%	복지부	아동통합 정보시스템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청소년 42.6%	청소년 40%	과기정통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10대 자살률 (10~19세, 10만명당)	8.0명	5.6명	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신체활동 실천율 (주 3일이상 고강도운동)	41.5%	47.7%	질병청	청소년건강 행태조사
	여가 활용 만족도	50.3%('23)	55%	데이터처	사회조사
보호	핵심 가정보호율	46%	52%	복지부	아동통합 정보시스템
	드림스타트 지원아동 가족기능 향상도	76.5%	77.5%	복지부	지원보호아동, 자립 준비청년 패널조사
	재학대율 (1년내 재학대 발생율)	8.7%	8.1%	복지부	아동통합 정보시스템
권리·참여	핵심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84.1%	86%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72.1%	73.3%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자체 개선이행율	70.5%	90%	복지부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보고서

V

분야별 추진과제

1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 방향

□ 개선 필요사항

- **(양육지원 부족)** 아동수당('18), 부모급여('23) 등 저연령 아동 양육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8세 이상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 **(육아·돌봄 미흡)** 낮은 부모교육 접근성 및 육아지원제도 활용도,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사망사고 발생('25.2.26. 인천, 6.25·7.2. 부산 등)
- **(신체·정신건강 악화)** 스마트폰 과의존, 학업 부담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악화되었으나, 지원인프라는 부족
 - *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성인 22.4% 청소년 42.6%(²⁴) / 본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19. 70 → '24. 66.1%
- **(놀이·여가 부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충분한 휴식·놀이 및 여가 활동 필요하나, 과도한 사교육 등으로 쉼·여가 보장 미흡
 - * (아동 방과후 희망/실제활동, '23) 친구와 놀기 42.9/18.6%(↓24.3%p), 학원과외 25.2/54.0%(↑28.8%p)

□ 개선 방향

- **(양육지원 확대)** 8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 및 자립 준비를 위한 보편적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중장기 검토
 - **(육아·돌봄지원 강화)** 부모교육 내실화 및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하고, 나홀로아동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내 돌봄지원 강화
- **(신체·정신건강 증진)**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신체활동 활성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확대 등 통해 아동의 건강 증진
 - 학생 건강검진을 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강화 통해 소아의료 접근성 제고
- **(쉼·놀이 권리 보장)** 공교육 내실화, 문화활동·시설 지원, 거버넌스 구축·인식개선 등 통해 아동의 쉼·놀이 권리 보장

◇ 추진과제

1. 기본 돌봄 · 양육환경 구현

① 아동 양육 · 자립 기반 강화

-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25년 만 8세 미만 아동에서 매년 1세씩 상향,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점진적 확대('26~) 신규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안)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지급대상 연령	만 8세 미만 아동	만 9세 미만 아동	만 10세 미만 아동	만 11세 미만 아동	만 12세 미만 아동	만 13세 미만 아동

※ (특례) 2017년생은 만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2029년까지 연내 계속 지급

- 비수도권(+5천원/월) 및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 +1만원/월, 특별지역 +2만원/월)에 대해, 추가급여 지급('26~)

* (인구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5년 주기 지정되며, '21.10월 기준, 기초지자체 89개 지정(단, 광역시 자치구(5개)는 비수도권(+5천원)으로 분류)

** (우대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지표(지방시대委), 예타 낙후도 평가(KDI) 기준 분류

- 인구감소지역(84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 시, 기존 추가급여에서 월 1만원 가산 지급('26~)

< 아동수당 추가급여 지원(안) >

구분 (전체 229개 기초지자체)	(기존) 월 지급액	추가급여		최종 월 지급액	
		현금 지급 시	지역화폐 선택 시	현금 지급 시	지역화폐 선택 시
수도권(62개)	10만원	-	-	10만원	10만원
비수도권(83개)		0.5만원	0.5만원	10.5만원	10.5만원
인구감소 지역		1만원	2만원	11만원	12만원
우대지역(44개) 특별지역(40개)		2만원	3만원	12만원	13만원

- 아동수당법 및 하위법령, 지침 개정 및 시스템 기능개선 등 거쳐 '26.1월부터 아동수당 대상 확대 및 추가급여 지급 추진

- **(자산형성 지원)**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장기 검토

- **(돌봄시간 확보)** 남성, 중소기업 등도 일·육아지원제도를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 확보^[강화]
-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일·육아지원제도의 지원 수준 확대 및 유연성 제고*, 사업주 부담 완화** 등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 * 자녀의 입원, 휴교, 방학 등 발생 시, 육아지원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연 1회) 추진
 - **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동료에 대한 지원 등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
- **(유연근무 활성화)** 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 * (예시) 유연근무 활용 시, 사업주 지원 강화 및 제도 접근성 개선 등

2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 **(부모교육 내실화)** 아동의 발달 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교육 제도화, 홍보 강화 등 통해 실질적 양육역량 강화(26~)^[신규]

<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콘텐츠 예시 >

- ① **(신생아)** 수유, 수면 교육 등 육아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② **(영유아)** 아동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법 등
- ③ **(사춘기)** 아동과의 갈등관리 방법, 아동을 이해하는 법 등
- ④ **(스마트폰 과몰입)** 아동과 부모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 등

- **(부모교육 연계·제공)** 부모교육 콘텐츠 제공부처 간 협업체계 마련 및 분산된 온·오프라인 부모교육 연계·제공체계 강화

< 온·오프라인 부모교육 제공 현황 >

부처	제공기관	제공방식	주요내용
복지부	복지로	온라인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의무수강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아동안전 및 권리 등 교육콘텐츠 제공
교육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오프라인	건강한 부모 역할 등 교육콘텐츠 제공
교육부	학부모온누리	온라인	발달단계별 온라인 강의 및 가이드북 제공
성평등부	가족센터	오프라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등 제공

- **(부모교육 제도화)**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양육 관련 급여 수급자의 부모교육 이수 의무, 국가·지자체의 부모교육 제공 등 규정

* (예시) 아동 양육 관련 급여 수급 시, 연 1회 이상 국가가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부모교육 강의를 이수해야 하며, 국가·지자체는 부모교육 강의를 안내·제공해야 함

- **(교육 활성화)** 아동 양육 관련 급여 수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부모교육 안내·제공 및 교육 인식개선 등 위한 정책 홍보 추진

* (예시) 아동의 발달단계별 온라인 부모교육 안내(분기별 1회), 지역별 오프라인 부모교육 강의 개설 및 수강 안내(연 1회, 지자체)

- **(체험형 부모교육 공간)** 아동 상황·권리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민관협력 등 통해 체험형 부모교육 공간* 조성 추진('27~) 신규

* (예시) 보호자가 아동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공간 조성, 아동권리협약 설명 등

< 참고 : 아동의 시점 카페(こどもの視点カフェ, 일본 도쿄) >



※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 우유 따르기 등 일상이 힘든 이유, 어른의 질책이 무서운 이유를 VR, 모형 등으로 구현

3 나홀로아동 등 아동 돌봄 강화

- **(나홀로아동 보호)** 부모의 궤치못한 사정으로 일시라도 어린 아동만 홀로 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보호 강화 신규

-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 이용자 수요조사('25) 바탕으로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 확대(~24시) 및 참여기관 확대 검토 추진

* (연장돌봄 참여기관, '25.6월) 지역아동센터 19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8개소

- **(아동 방임기준 마련)** 어린 아동만 가정에 홀로 두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정립 및 제도적 아동 방임기준 마련^[신규]

< 아동 방임기준 : 한국 vs 해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의식주 포함,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 (미국) 일리노이 14세 미만 아동을 혼자 두는 것, 오리건 10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 10시간 이상 집에 두는 것, 캔자스 6세 미만 아동을 혼자 집에 두는 것은 부적절 ○ (영국) 적절한 감독(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는 것 포함) |
|---|
-
-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서비스 공급 확대 및 이용자 양육부담 완화^[강화]
 - **(정부지원 확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등 정부지원 확대 추진
 - **(지원체계 개선)** 돌봄수당 인상 등을 통한 아이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추진
 - **(틈새돌봄 확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돌봄 운영 모델(기관 자체 운영, 거점형, 연계형, 시간제 보육 등) 확대 추진^[강화]
 - 아침·저녁 및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틈새돌봄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 거점형·연계형 돌봄 운영기관 : ('26년) 200개원 → ('27년 이후) 300개원 이상
 - 가정양육 시 긴급·일시적인 돌봄 수요 대응, 부모의 육아휴식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4 지역 돌봄체계 개선

-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학교돌봄 외, 지자체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국가·지자체가 함께 마련하여 질 높은 돌봄·교육 제공^{신규}
 - 중앙 초등돌봄·교육협의체(관계부처),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지자체·학교)를 통해, 지자체 운영 초등돌봄·교육 모델* 확산('26~)
 - * 초과수요 있는 학교의 학교 밖 돌봄·교육 위탁, 학교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등 구체적 모델 마련 및 각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모델 선택·운영
 - 학교 부담 경감을 위해, ^{가칭}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지속 확충하고, 학교 밖 돌봄·교육 이용 학생의 안전사고 보상체계 마련 검토
 - * (^{가칭}온동네 돌봄·교육센터) '25년 58개 → '30년 300개 목표
- **(방과 후 마을돌봄체계 개편)** 일반아동 이용 촉진을 위한 브랜드 일원화 및 지역·이용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지원^{강화}
 - **(브랜드 일원화)** 마을돌봄 고유의 기능은 유지·강화하되, 기존 명칭에서 오는 낙인효과 해소 및 맞춤형 프로그램 부각
 - * 지역아동센터('24. 4,206개소), 다함께돌봄센터('24. 1,226개소)로 확연히 구분되는 명칭을 통합 브랜드로 리뉴얼 추진
 - **(취약계층 우선보장)** 일반아동 이용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이용 보장 및 지역·아동 특성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강화
 - * (예시) 다문화아동 많은 지역은 한국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시 인센티브
 - **(지속가능성 제고)** 아동 수 감소, 지역(농어촌, 수도권)별 여건 차이, 이용자 특성 등 고려한 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 개선 추진

2.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① 아동의 마음건강 지지

-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상담 확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민관협력과 지역 내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강화]
 - **(예방·상담)** 연령대별(유아·초·중·고) 맞춤형 예방 교육* 통해 과의존 콘텐츠 대응 역량 강화 및 AI·디지털 기반 비대면 상담 확대
 - * 연령별, 과의존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역량 교육 과정 재설계('25~'26)
 - 지역 아동복지시설 내 취약아동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과의존 예방 수칙 등 찾아가는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
 - **(가이드라인)**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활용 지원을 위해, '가칭청소년 디지털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민·관 협력)**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기업·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기업 자율조치안 마련(~'26)
 - **(지역 통합지원)** 디지털 과의존 예방·발굴·상담·교육·치료 서비스 연속성 보장하는 생태적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연구 추진
 - * (모델(예시)) 지역 내 자원 발굴·연계 및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과의존 아동에 대한 ▲예방·상담(과기정통부)-▲발굴·교육(교육부)-▲치료(복지부) 등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사회적 책무 강화)**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방-발견-상담-치료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추진^[강화]
 - **(조기발견 지원)**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3년 주기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 1·4, 중·고 1학년) 및 수시 '마음EASY검사' 운영

- **(연계·치료 지원)** 학교를 방문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 및 진료·치료비 지원하는 '마음바우처' 운영 확대
- **(지원기반 강화)**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로 교내 상담실 위(Wee) 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를 통한 학생 상담 지원
- **(위기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연계, 민관협력 등 통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상담 접근성 제고 등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강화}
- **(청소년안전망 강화)** 지역 내 청소년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복합문제 해결 지원



- **(위기청소년 발굴)**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 청소년상담1388*, 찾아가는 상담(청소년동반자) 등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통해 발굴하여 상담·긴급구조·보호·의료·학업지원 서비스 제공
- * 365일 24시간 상담(전화·온라인) 및 긴급구조, SNS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사이버 아웃리치 활성화
- **(고위기 강화)** 종합심리평가 사업(17개 권역) 및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확대 추진 등 자살·자해 특화 서비스 강화

- **(자살 예방 강화)**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확대, 재발방지 위한 심리부검 추진^{강화}
- **(발굴·연계 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서비스연계 지원
 - * (예시) 아동보호전문기관(복지부), Wee센터(교육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성평등부) 등 유관기관 간 발굴·정보 연계 추진
- **(예방활동 강화)** 모든 학생을 위한 '사회정서교육' 확대, 생명지킴이 교원 양성 확대를 통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위기 예방
 - * (사회정서교육) 자살예방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사회정서역량(감정조절, 자기관리, 관계맺기 등) 함양 지원을 위한 학교 기반의 보편적 마음건강 교육
- **(분석·재발 방지)** 아동의 자살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해, 학생 대상 심리부검 시행 추진
 - * (심리부검)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 통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고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법

② 아동의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

- **(체육활동 활성화)** 콘텐츠 개발·보급 등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강화]
 - **(틈새운동 확산)** 체육활동의 일상화를 위해, 아침 등 틈새시간을 활용한 규칙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
- **(체육 인프라 확충)** 체육시설 확충*, 지역 내 체육시설자원 연계를 통한 늘봄학교 운영지원 등 통해 아동체육 인프라 확충^[강화]
 - * (예시) 학교 복합시설 확충 : '24년 80개 → '27년 200개 목표
- **(소아비만 예방)** 학교-지역-가정 협력을 통한 소아 비만 중점관리 추진 검토('27~)^[신규]
 - 학생검진 결과를 활용한 지원대상 발굴 및 예방·관리 서비스 연계
- **(건강검진 일원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 통합 추진^[신규]
 - * (시범사업) 2024년 세종, 강원 원주 2개소 → 2025년 세종, 강원 원주·횡성 3개소
 - 학생검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학생 건강검진 위탁 시범사업 ('24.7월~) 등 통해 전환 준비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 「학교보건법」 개정 등 통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추진
- **(예방접종 지원 확대)** 아동 대상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단계적 확대 추진^[강화]
 - * 지원대상 : ('25) 6개월~13세 → 지원연령 점진적 확대 추진('26년 6개월~14세)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남성청소년 지원 단계적 확대 추진
 - * 지원대상 : ('25) 12~17세 여아 → 남아 지원 점진적 확대('26년 12세 남아 신규 지원)

③ 소아 의료접근성 제고

- **(미숙아 지원 강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전국 시행*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통해 미숙아 맞춤형 지원 강화^[강화]

* ('25) 전국 6개 지역 시범사업 시행 → ('26~) 전국 17개 시·도 확대 시행 추진

** ('25) 출생체중별로 최대 3~10백만원 지원 → ('26~) 최대 20백만원까지 상향 검토

- **(소아 의료체계 강화)** 중증·응급·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접근성 강화 및 소아의료 인력 유입 지원^[강화]

- **(진료 인프라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

구분	인프라	기존('24년)	개선방향(안)
중증·응급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전국 14개소	설비·장비 비용 지원(계속)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12개소	지역격차 해소 고려, 추가 설치 추진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전국 101개소	전국 140개소('30년 목표)
지역협력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24년~, 20개)	본사업 추진* 검토('26년~) * '26년 사업 평가를 통해, '27년 시범사업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 검토

- **(소아의료 보상 강화)** 중증소아 관련 수가 지원 확대 및 대안적 지불제도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6.下) 및 확대 추진

현행	개선방안(안)
<p>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지속 강화* 중이나,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충분한 보상에 한계</p> <p>* 소아중환자실 및 소아응급·고난도 수술 보상 확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가) 소아외과 수술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 연령 가산 적용 대상 및 연령 확대 *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 대상 연령 가산 신설 및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 확대(284→603개)('25.4월 시행) ○ (대안적 지불제도) 운영손실 보상 및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차등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 지속 확대

3. 아동이 마음껏 놀고 꿈꾸는 환경 조성

① 공교육 내실화 및 휴식권 보장 강화

- **(공교육 내실화)**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강화]
 - **(이음교육)** 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원활한 전이·적응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추진
 - * 5세 유아의 놀이·일상생활에서 기초역량 함양, 초등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및 통합교과 연계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적응지원, 학부모 이해 교육 등
 -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운영)** 충분한 놀이와 쉼 보장 원칙 하에 유아 중심 방과후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특색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 ('24년, 5종) 놀이영어, 체육, 과학, 음악, 미술 ('25년, 2종) 창의성·사회성 기르기 프로그램
 - ** 가칭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운영기관: ('26) 1,000개원 → ('27~) 1,500개원 이상
- **(놀이정책 거버넌스 운영)**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놀이정책 총괄 조정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범정부 놀이정책 회의체 운영^[신규]
- **(아동정책 내 휴식권 보장)**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아동 관련 정책 수립 또는 평가 시, 아동이 '온전하게 쉴 권리' 고려 검토^[신규]
 - * (예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내 평가지표 신설 등
- **(아동 쉼·놀이 인식개선)** 연령에 맞는 교육과 쉼·놀이의 중요성 등 인식개선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 쉼·놀이 캠페인, 홍보 추진^[강화]
 - * (사례) 아동 놀 권리 옹호 캠페인 "놀이터를 지켜라"(세이브더칠드런, '14~)
아동 쉼 권리 옹호 캠페인 "나도 쉼이 필요해"(굿네이버스, '22~)

② 아동의 놀이·여가·문화 접근성 개선

- **(문화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포함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예술단' 지원을 통해 예술역량 향상 및 문화예술 경험 기회 확대^[강화]
 - * 오케스트라('10~), 무용단('22~), 극단('24~), 시범스튜디오('25~) 등 총 110개 지역거점 운영('25)

- **(아동친화 문화시설)**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개편 시, 연령별 이해·관심사 고려한 맞춤형 전시·체험 기획 및 전시 연계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개발·활용 추진^[강화]

* (예시) 인터랙티브·촉각 체험전시물 체험 콘텐츠 등

- 어린이병원, 지역발달장애학교 등 대외기관 협업 프로그램 확대 및 가족 체험프로그램 등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아동 여가·놀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통해 직업·문화예술·과학·환경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강화]

* (운영현황)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운영,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864개소('24. 기준)

3 디지털 세상 속, 아동의 안전한 삶 보장

- **(유해정보 차단·예방)** 디지털 성범죄물,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예방 및 상시·현장점검 실시 등 신속한 삭제·차단 지원^[강화]

* (불법·유해정보 삭제·차단 현황) '22년 23.4만 → '23년 25.5만 → '24년 34.6만건

- **(사업자 조치의무 강화)** 사업자가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성범죄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우선 차단 후, 방심위 심의요청 할 수 있도록 추진

- **(온라인성착취 선제대응)**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정보를 자동 탐지 및 신고, 삭제 지원하는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추진^[신규]

- **(예방교육 지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교육 콘텐츠 보급 추진^[강화]

- **(온라인 모니터링)**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운영 등 통해 온라인 플랫폼 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유해정보 상시 점검 및 자율규제 요청^[강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 대상 연령 상향*, 디지털 잇힐 권리 법제화 등을 통한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강화]

* (현재) 14세 미만 아동 → (개선) 14세 미만 아동 + 14세 이상 ~ 18세(또는 19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2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 방향

□ 개선 필요사항

- **(보호수요 증가)** 보호대상아동 수는 감소 중이나 가정형 보호 요구 증대, 아동학대 신고 증가 등에 따라, 촘촘한 보호제도 마련 필요
*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현황 : ('20) 38,929건 → ('22) 44,531건 → ('24) 47,096건
- **(지원수요 다변화)** 장애아동·경계선지능 아동 등 특수육구아동과 한부모·다문화 등 취약가구 아동의 증가에 따라, 발굴 및 맞춤형 지원 필요
* 시설보호 아동 중 경계선 지능, ADHD 등 특수육구 아동 비중은 41.9%('24)
- **(자립지원 제한)** 저소득 가구 아동과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필요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차상위수급자의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납부율 저하
- **(인프라 취약)** 종사자의 잦은 이·퇴직 등 취약한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 '20년 이후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중 275명 퇴사(누적), 인력 충원율도 86.2% 수준('24)

□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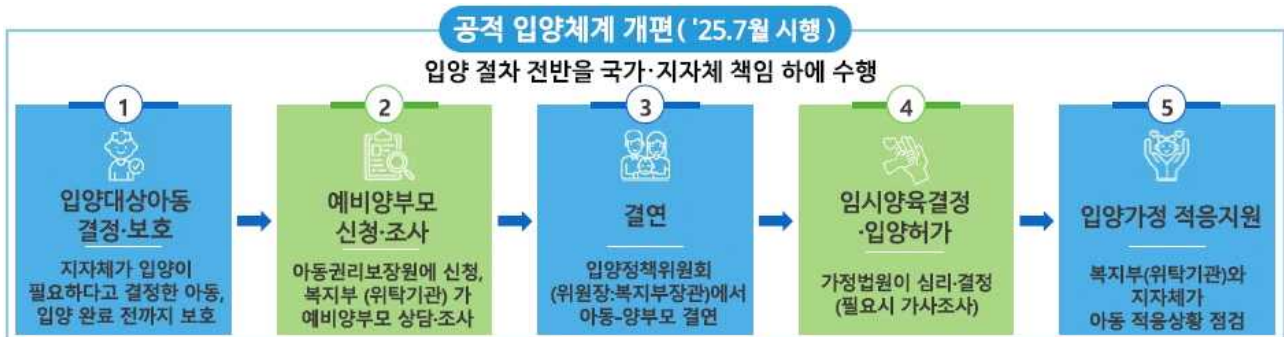
- **(가정형 보호 강화)** 가정위탁 활성화 및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등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 **(취약아동·가구 지원)** 돌봄·지원이 필요한 취약아동 및 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자립역량 강화)**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보호대상인 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역량 향상 지원
- **(인프라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통해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안착

◇ 추진과제

1.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① 공적 입양체계 안착 및 헤이그협약 비준

- **(공적 입양체계 안착)** 헤이그협약 이행 및 아동의 안전·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 절차를 공공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25.7~) 신규
 - **(공공 시행체계 마련)** 복지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호하고, 입양 절차 전반을 결정·관리
 - * **(기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절차 → **(개선)** 지자체에서 입양아동 결정·보호, 복지부가 입양 심의·결연 등 수행(양부모 상담·조사, 적응지원 업무는 전문기관 위탁)
 - **(아동 중심 결정)**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및 개별 입양 관련 사항을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이하 아동복지·의료·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법원행정처장 추천자 등으로 구성(사무국 :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후 적응지원)**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 및 서비스 지원
 - **(국내보호 우선)** 국내아동은 국내입양 등 국내 보호체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추진
 - * 연도별 해외입양 아동 수 : ('20) 232명 → ('22) 142명 → ('24) 58명 → ('25.11) 24명
 - ** 불가피한 해외입양 시,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해외 중앙당국 및 관련기관과 상호 협의하에 해외입양 절차 진행



- **(헤이그협약)** 국제적 기준·절차에 맞게 모든 입양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헤이그협약 비준('25.10) 강화

2 가정위탁 활성화

- **(가정위탁 지원체계 국가 책임성 강화)** 지역 주도 지원체계에서 국가 차원 위탁부모 모집·관리체계로 전환^{신규}
 - **(가정위탁 공적 지원체계 개편)** 아동 수 감소, 지역별 모집 환경 격차 등 고려, 아동-위탁가정 결연 지원체계 행정책임성 제고
 - * (현재) 지방이양사업 하 예산제약 및 지역별 편차 → (개선) 국가단위 모집·관리, 재정지원
 - **(양육지원 확대)** 양육보조금 권고 이행력 강화* 및 지원수준 확대. 양육점검 외 위탁부모에 대한 가외적 행정부담 완화**
 - * (현재) 지침으로 권고 → (개선) 복지부장관 고시로 권고
 - ** (현재) 생계급여 실태점검 전수대상 → (개선) 양육상황 점검 결과 이상징후 발견시 점검
 - **(전문가정위탁* 확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가정형 보호로서 4050 전문위탁가정 위탁부모 지원군(풀) 확대
 - * 사회복지사 등 일정 자격을 지닌 가정에 학대피해, 영아, 장애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는 제도(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 추가지원)
 - **(조손가정 등 양육코칭 확대)** 상대적으로 양육부담이 높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조손가정 대상 사례관리 강화
 - * 양육자가 고령이거나 채무·상속, 정신장애 등으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위탁가정을 新가족형태로 인정)** 위탁부모에 일상양육에 필요한 법적권한을 강화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신규}
 - **(아동양육 책임성 강화)** 아동에게 명백히 유리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위탁부모에 제한적 법정대리권 부여 추진
 - *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휴대폰 개통, 은행계좌 개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 **(제도적 기반 강화)** 일반 위탁부모 모집 및 결연 확대를 위해, 위탁 아동 양육에 따른 편의·돌봄 등 제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 추진
 - * (예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제공(장애아동 위탁 시), ▲직장어린이집에 가정위탁 아동 입소, 할인·감면 등 ▲다자녀 혜택 부여 등 검토

③ 후견제도 개선 및 원가정 복귀 지원

- **(아동의 의사결정권 보장)** 미성년 아동 양육에 필요한 법적 의사결정의 신속한 보장 및 후견인 권한 정립 추진 강화
 - **(후견제도)** 아동 양육의 의사결정 공백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책임을 강화하고, 후견인 신속한 선임·지정 지원
 - * (주요내용 예시) 공공후견인 지정 전까지 지자체장이 임시후견인 역할 수행, 유기아동 발견 시 지자체장을 후견인으로 당연 지정 등
 - **(시설 후견)** 일상양육에 필요한 양육자의 법적권한과 지자체장의 후견권 정립 및 지자체장의 관리감독 강화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추진 ('61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단 7개 조항만으로 지속)
 - **(공공후견제 도입)**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인 지원 제도화 및 단계적 확대 추진
 - * 양육자가 고령이거나 채무·상속, 정신장애 등으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초기 보호단계부터 가정형 보호 강화 및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지원 추진 신규
 - **(초기보호)** 시군구 단위의 제한된 선택지를 넘어, 광역 단위의 보호자원* 상시 모니터링 및 공유를 통해, 시군구 결정 지원
 - *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 ** 초기보호단계(시군구 공무원) 및 중장기 보호조치 시(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결정 가능하도록 지원
 - **(원가정 복귀)** 중장기 보호조치 결정을 준비하면서도, 원가정 복귀 가능성 있는 아동 대상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위탁가정, 그룹홈, 양육시설 등 입소 아동 대상 자조모임, 멘토, 장학사업 등 활성화

4 시설 입소아동 권익증진

- **(시설 고도화)** 저출생으로 인한 보호아동 수 감소, 특수육구아동 및 원가정 복귀 증가에 대응,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고도화 추진^[강화]
 - **(시설별 전문서비스 강화)** 시설별 기능 전문화를 목표로 전문인력 필수배치 추진 및 전문기능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촉진
 - * (예시) 보호치료시설 입소아동(가목불량아, 나목정서적·행동적 장애아)에 시·도교육청 대안 교육 과정을 통한 정규교육 공백 지원, 보호치료시설은 전문인력 통한 전문화
- **(시설아동 권익증진)** 양육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사회적 낙인 및 과도한 부모개입 방지^[신규]
 - **(낙인 예방)** 보호대상아동이 성년 이후 필수 증빙서류 발급 시에도, 아동보호 이력이 의도치 않게 드러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추진
 -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하에 시설(종사자)-친생부모 간 권리 및 책임관계 재정립, 아동권리 강화 등 추진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시설 특수육구아동 지원)** ADHD, 경계선 지능 등 아동 발견 시, 전문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 활용 강화^[신규]
 - **(전문서비스 연계)** 시·도 중심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통해, 관내 이용 가능한 전문서비스 연계 지원(시범사업, '25.6~)
 - **(지역 의료자원 활용 강화)**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비용지원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 지정 및 정기적 진료 지원토록 개편 추진
 - * (현재) 신청 후 일부 시설만 진료비 지원 → (개선) 지역 내 지정병원 통한 정기 진료 지원
- **(시설안전 강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안전점검 및 시설 이용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재난·안전 대응,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실시^[강화]

5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 **(위기아동 조기발견)** 예측모형(AI)을 활용한 위기 의심 아동 발굴·지원(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선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 강화
 - **(시스템 개선)** 정보 입수 체계 개편 및 정보 연계 확대 추진
- **(위기아동 조가지원)**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강화, 타제도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강화}
 - **(시범사업)** 학대 판단 전·후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에 양육코칭, 상담 등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가지원 시범사업 확대 추진
 - * (주요 지원내용) 의료비·물품 지원, 가족기능회복 지원, 양육 코칭,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 등
 - ** '24년 시범사업 통해 400가구 지원 → 점진적 사업 확대 추진('26년 600가구 지원)
- **(재학대 방지 및 회복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질 제고* 등 학대 대응 인프라 기능·역할 정비^{강화}
 - * (예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등
 - **(가정회복)**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재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확대
 - **(의료지원)** 지자체의 피해아동 의료비 선납 후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을 통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 지원
 - * (현행) 보호자의 무관심, 방치로 인한 피해아동 치료 지연 → (개선) 긴급한 의료 지원 필요시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경제적 어려움 등 예외)
- **(아동학대 환류체계 구축)**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사례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점 도출 및 환류^{신규}
 - * (추진체계(안))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 ^{가칭}아동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 설치 및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제도 개선사항 마련, 이행 점검 등 실시
 - **(아동사망검토)** 학대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Child Death Review) 제도 도입 방안 마련

2.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

① 위기 유형별 아동 맞춤형 지원 확대

- **(경제적 취약아동 지원)** 시·군·구 드림스타트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강화}
 - **(사례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아동 발달단계, 학업 수준, 가정환경 등에 따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개발·적용
 - * (현행) 기초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사례관리 지원 → (개선 예시) 디지털 중독 예방, 학력 격차 보완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드림스타트 전담인력 배치하여 관내 책임 사례관리, 아픈가족 돌봄부담 완화 서비스 추가 연계
 - **(위기청소년 지원연계 강화)** 중·고교 진학에 따른 욕구 변화에 맞춰, 청소년지원기관 등 등 위기가구 아동으로 사례관리 지속 지원
-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발달장애 조기 발견·지원을 위한 제도 접근성 개선* 및 발견 과정에서 가정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제공^{강화}
 - * (예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비용 지원방식(보건소 방문 신청) → ①온라인 신청 지원, 발달장애 보고에 따른 ②어린이집·유치원의 행정부담 경감·인력지원 등 통해 조기발견 제고
 - ** (예시) 자녀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연계 제공(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위험) 영유아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전후 상담 제공(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 인프라* 확대 추진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기관 등
-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 교실-학교-학교 밖의 3단계 안전망* 통해,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속도·수준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강화}
 - * [1단계] 즉각적(교실 내) → [2단계] 종합적(학교 안) → [3단계] 전문적(학교 밖)

② 취약가구 아동 지원 및 격차 해소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25.7월 시행),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안정적 양육을 돕고, 학습·정서·역량강화 지원^[강화]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양육비 지급 및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완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추진
 - * 지원기준 : ('25)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6)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지급액 : ('24) 21만원 → ('25) 23만원
 - **(학습·정서·역량강화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가족센터 확대 및 아동 정서*·역량강화** 지원
 - * 취약·위기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전담 인력의 보수 교육 강화 등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체험·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다문화 아동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정서 지원^[강화]
 - **(양육·발달 지원)** 임신·출산, 영·유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 및 언어교육 지원
 - **(교육 지원)** 가족센터를 통한 학령기별 기초학습 및 진로설계 지원, 이중언어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미등록 외국인 아동)**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한시적 시행(~'28.3)^[강화]
 -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 추진('26~)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검토 추진
- **(수용자 자녀 지원)** 보호자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발굴 지원* 및 아동보호체계 내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강화]
 - * 교정청(수용자 자녀지원팀)은 18세 미만 자녀 및 수용자 의사 확인 후 지자체에 즉시 보호 의뢰
 - ** 아동·친인척 상황 점검을 종합하여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조치 결정

3. 취약·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① 취약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 **(자산형성 지원 강화)**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에 맞춰 관리체계 강화^[강화]
 - **(후원 발굴*)** 기업 사회공헌 연계 및 민간 NGO 등과 후원모집 협력체계 구축 강화**, 지자체 주도 후원자 발굴 홍보 등 추진
 - * (후원금 관리 강화 병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한 전산관리,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담부서 신설 등
 -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 '가칭사회공헌 플랫폼' 연계·활용 추진
 - ▲아동과 1:1 결연을 통해 아동의 적립금 적립 지원('24. 민간 후원 약 95억 모금)
 -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7항에 근거,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후원 모집·연계 중
 - **(사업방식 구조적 개선도 검토)** 취약가구의 저조한 납입률 개선 방안 검토
 - * (예시) 중장기 저축효용 저하 방지 위한 중도인출 요건 완화, 정책금리 제고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가입률 제고)** 가입·적립 시, 본인저축분 아동수당 활용 안내하고, 가입 보호자·청소년 대상 경제·금융교육 국가사업 추진
 - * (예시) 아동발달계좌(CDA) 제도의 효과성 및 체계적 자산관리 교육 등 제공
- **(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체험활동 등 운영 지원^[강화]
 - **(바람개비서포터즈)** 자립준비청년과 지역 내 자립선배와의 멘토링 및 자립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자립지원 특화지원)** 자립 임박한 보호연장아동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자기관리, 진로탐색 등 8개 영역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 * (8대 지원영역) ①일상생활, ②지역사회자원, ③자기관리, ④사회적기술, ⑤자산관리, ⑥진로탐색, ⑦직장생활, ⑧사회진출
 - **(자립체험프로그램)** 만 15세 이상 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대상으로 자립생활 체험 및 진로탐색, 자존감 회복 등 자립역량 함양

②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고위험군 맞춤형 지원)** 고위험 사례*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26) 및 전담인력 역량교육 강화('27) 추진^{신규}
 - * 사회적 관계 단절, 자살 고위험군, 취업 실패 등
 -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청년미래센터(위기청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취업) 등 특화기관 간 협업·연계를 통해, 지원 실효성 제고
 - 전국민 마음건강바우처 우선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추가('24.8~)
 -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20일내 8회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 **(경제적 자립 지원)** 보호 종료 후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 지급 및 자립정착금** 지원(권고), 의료비(의료급여 2종 수준) 지원 등 지원
 - * (자립수당)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자립수당 지급 : 50만원/월('24~)
 - ** (지자체 자립정착금) 자립·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23~)
 -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 공급 및 지원내용, 절차 안내 등 위해 유스타트 상담센터 지속 운영
-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자립에 필요한 무형자산 축적, 심리지원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신설·제공을 통해 안정적 자립 지원^{강화}
 - * 경제투자·자산관리 등, 법률사기피해 방지 등, 일상생활·심리과소비 예방 및 심리지원 등
 - 자립 전, 청소년기부터 진로 설계 지원을 돕고, 자립 후 진로 선택,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중장기 멘토링,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강화}
 - * (예시) 보건복지부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지원 강화 등
- **(취업 지원 강화)** 군 입대, 대학 진학 등을 고려하여, 취업 지원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에서 확대 검토^{강화}
 - 자립준비청년 취업 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지원

4. 아동보호 인프라 내실화

① 아동복지체계 강화 및 지역 격차 해소

- **(아동복지체계 강화)** 아동복지체계 비효율성 극복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계분석 및 종사자 역량 강화·처우개선 추진^[강화]
 - **(체계 개편)** 아동복지 관련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 개편, 직무분석** 및 업무 효율화 추진
 - * 민간은 약 6,300개소 2.3만명이 종사 중이나 대부분 소규모·영세, 공공은 시·군·구 중심
 -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드림스타트 등 관련 조직·기관의 직무분석 추진
 - **(역량강화)** 아동보호제도 신설·확대, 특수욕구아동 증가 등에 따른 업무 난이도 증가에 따라, 아동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 **(처우개선)** 업무 과중,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한 아동복지 종사자의 잦은 이·퇴직 발생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 확충 검토
- **(지역 아동보호대책 강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 아동보호대책 내실화 추진^[강화]

【 지역(광역) 아동보호대책 주요 내용(안) 】

- ▶ 시·도 내 보호아동 현황 등 복지 수요·공급 현황조사 및 지역 내 인력·시설 공유를 통한 지역 완결적 아동복지체계 운영방안
 - ▶ 취약계층 아동,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아동 중심의 통합적 지원 제공방안(드림스타트, wee 클래스, 청소년쉼터 등)
 - ▶ 시·도 내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 사업의 지역적 불균형 개선방안
- ※ 지역 아동보호대책은 기수립 중인 시·도 아동정책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위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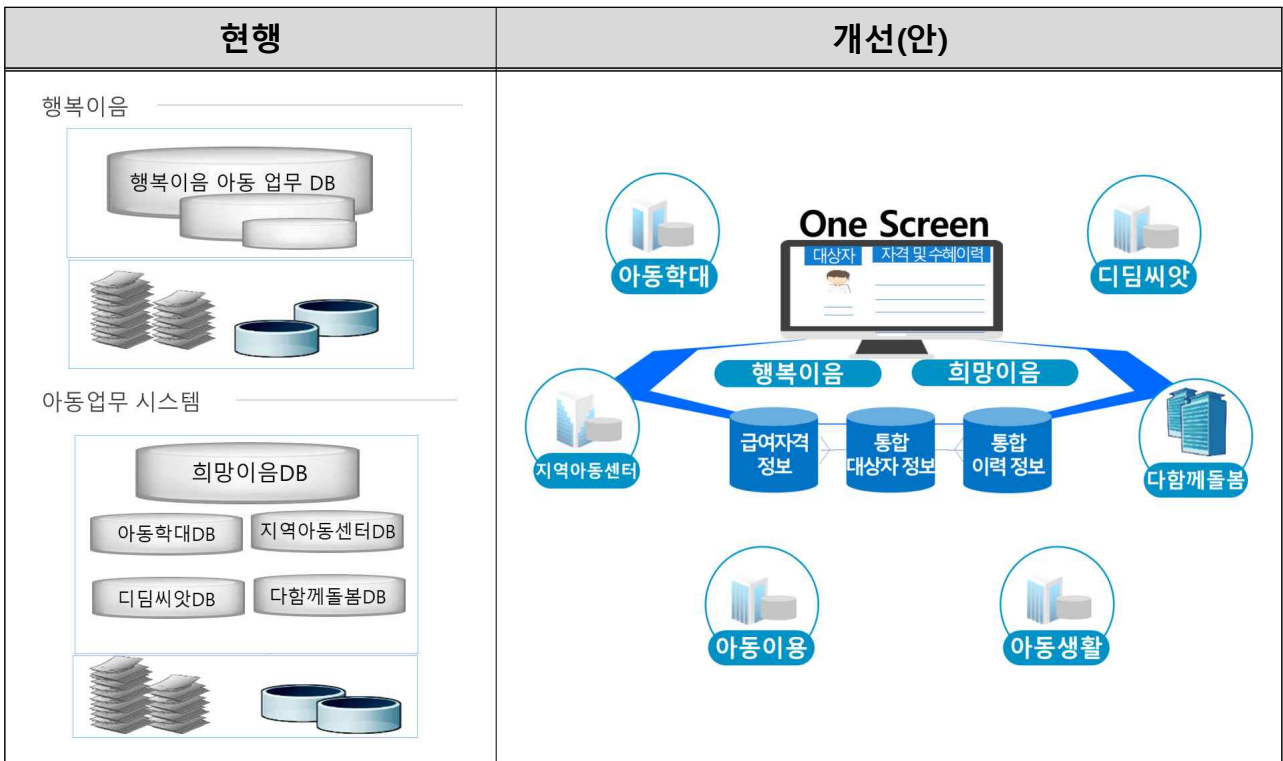
2 아동정보 통합관리 구축

- **(차세대 아동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분산된 아동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 공통DB 구축 등 통해 일원화된 아동 정보관리 기반 마련 신규

* 아동복지 관련 시스템은 ①사회보장(행복이음), ②사회서비스(희망이음), ③아동학대, ④지역아동센터, ⑤다함께돌봄센터, ⑥디딤씨앗통장 등으로 분산 구축·운영

- **(개인중심 이력관리)** 아동 개인을 중심으로 급여,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등 이력관리로 맞춤형 서비스 및 민·관 협업의 기반 조성
- **(서비스 제공 지원)** 복지 지원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아동 및 원가정 여건에 적합한 보호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성(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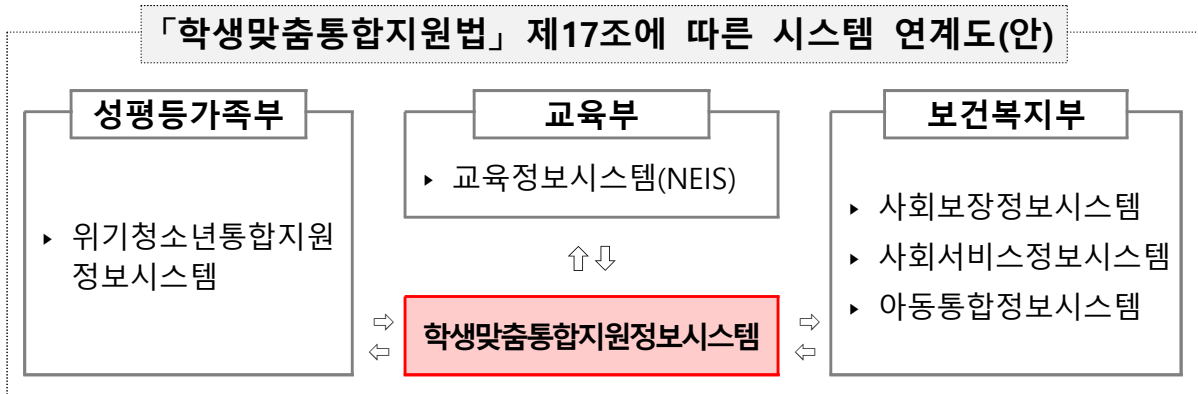
3 돌봄 · 보육 · 교육 서비스 연계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사업별·기관별 분절적으로 지원하던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신규}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25.1.21.) → 시행('26.3.1.~)

- **(학생 관찰·발굴·지원)**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학생의 위기징후 등을 관찰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추진
- **(지역연계 지원 강화)** 학생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을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지원을 위해 지원 과정에서의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학생정보 공유·연계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사업별·기관별 보유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추진 중('28.下 단계적 개통 예정)



3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 방향

□ 개선 필요사항

- **(부정적 인식 확산)** 노키즈존 지속*, 육아 부담에 대한 콘텐츠 확산 등 아동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전국적으로 노키즈존은 500여 개소로 추정(육아정책연구소, '23)

- **(권익 보호 부족)**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행정·사법절차에서 아동 의견청취절차 부재* 등 권익 보호 부족

* (예시) 아동보호체계의 보호 결정, 시설 결정 등에 아동의 의견 청취 부재

- **(아동참여 저조)**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총회 등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아동의 참여는 저조*하며,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침

* '21년부터 중앙부처·지자체 대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중이나, 체감도 미흡

□ 개선 방향

- **(아동존중 사회)**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친화도시 확산 및 아동친화 업소 인증 도입 등 통해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아동 권익 보호)** 제3선택의정서* 비준, 행정·사법절차에서의 아동 의사표명 지원 등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아동의 권익 보호

*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11년 채택, '14년 발효)

- **(아동참여 활성화)** 아동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 반영 및 환류체계 개선 등 실질적 정책참여 활성화

◇ 추진과제

1.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

① 법적 체계 정비 및 거버넌스 활성화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의 기본권,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명시 등을 위한 ^{가칭}「아동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신규

(예시) ^{가칭} 아동기본법(안) 주요 내용
(주요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91 비준)의 아동 4대 권리 구체화
- (생존) 태어난 순간부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적 삶을 위한 권리 (출생신고 될 권리,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
- (발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 (교육·보육, 휴식·여가 및 쾌적한 성장환경 등)
- (보호) 폭력, 착취 및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체벌금지의 명시적 선언,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
- (참여) 아동의 의견 존중을 위한 참여·표현의 권리 (‘아동총회’ 법제화, 국가 및 지자체의 아동 맞춤형 정보제공 의무 등)
※ 위 내용은 주요 내용에 대한 예시로, 사회적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정 추진

- **(아동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아동정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아동 및 단체 등 참여하는 아동정책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추진 강화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운영 확대*, 아동정책영향평가 확대 시행 등
통해 정책 개선방안 모색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상정·논의 추진
- * ('25) 평균 연 1~2회 운영 → ('26~) 예시안건 발굴 및 분기별 1회 개최 추진

② 지역에서의 아동친화 환경 조성

-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아동친화도시* 인증·관리기준, 운영체계의 제도화 및 지속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적극 추진 강화

* 민간(UNICEF)에서 지정, 전국 98개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인증('24)

** (예시) 아동친화도시 지정기준과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간 기준 일원화 검토 등

- **(지역 내 연계 협력 활성화)** 지자체-교육청-민간, 기초-광역지자체 등 아동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 활성화
 -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아동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및 정보제공 추진^[신규]
- * (인증기준 예시) 아동 전용 식기·의자 등 제공, 위생·청결 수준 충족 등

3 사회적 인식 개선

- **(아동친화적 인식개선 지원)**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아동 친화적 인식 전환을 위해, 범부처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추진^[강화]
 - **(매체·콘텐츠 모니터링)** 아동 관련 콘텐츠 제작 시, 아동 존중 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 * 아동보호 관련 심의규정 위반 시, 관계자 징계·경고 등 제재 통해 사업자 인식 제고
 ** 방송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학습권 보호 위해,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방송평가 반영(지속)

< 아동·청소년 콘텐츠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심위)
-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방미통위, '20.)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문체부, '24.)

- **(대국민 홍보 강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아동 친화 사업장 사례 공유 등 사회적 인식 전환 방안 마련 추진

(예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부모, 사업주, 국민 각 행위자가 공공장소(카페)에서 양육 친화 문화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양식 전달 캠페인 ○ (진행 결과) '23년 12월(12.1~12.31) 간 240만 회 이상 송출

2.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권익 보호

① 아동의 법적 지위 개선

- **(제3선택의정서 비준)** 아동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개인 통보(진정) 등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추진^{신규}

* 「통보(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11년 채택, ‘14년 발효)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주요내용 >

- **(개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 및 개인·국가간 통보(진정) 절차, 조사절차 등 규정
* 전문 및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
- **(개인 통보 절차)** 아동권리협약 및 1·2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 권리가 침해된 경우, 통보(진정) 절차 및 자격, 잠정조치 및 심의, 후속조치 등 규정(제5~11조)
- **(국가간 통보 및 조사절차)** 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당사국에 대한 통보 및 조사절차 규정(제12~14조)

- **(법적 지위 개선)** 행정·사법 절차에서 아동의 의사 표현 지원을 통한 아동의 법적 지위 개선 및 권리보장^{강화}

- **(사법 절차 개선)** 가사소송(이혼소송, 입양) 등 각종 사법 절차상 아동의 의견표명권 도입·확대 추진하여, 진술 기회 보장 및 법률지원

* (예시) 의사 표명이 가능한 아동의 경우, 연령 무관하게 의사 표명권 부여 검토

- **(행정 절차 개선)** 아동의 보호 결정, 시설 결정 등 아동보호체계 내 각종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 도입 추진

* (예시) 사례결정위원회 등 아동 관련 정책·의사결정 시 아동의 의견표명 보장 등

- **(상소 제한 철회)** 형사피의자 아동에 대한 상소 제한* 철회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보(제40조제2항나호(5)) 철회 추진

*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에 대한 상소 적용 제외(군사법원법 제534조) 등

2 다양한 여건의 아동 권익 보호

- **(일하는 아동 지원)** 일하는 아동·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및 근로 윤리 제고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교육, 홍보 등 지원^[강화]
 - **(상담·권리구제)** 근로권익 침해 청소년 대상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 (지원절차) 상담(전화·인터넷·SNS 등) → 보호위원 배정 → 1:1 심층상담(임금계산, 진정접수 안내 등) → 공인노무사 또는 진정 등 관련 절차 대리
 - **(온라인교육)** 청소년(중·고등학생) 대상 근로기준법령 관련 온라인 교육 영상 및 교재 등 제공
 - * (예시) 청소년에게 미래가 되는 근로권익교육(노동인권, 아르바이트 실전편 등)
 - **(홍보)**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운영, 채용엑스포·설명회** 등 참여
 - *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카드뉴스, 쇼츠, 홍보영상 등 제작·홍보활동
 - ** (예시)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 청년정책 박람회, 대학 채용설명회 등
- **(보호소년 지원)** 소년원학생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교육·회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강화]
 - **(인프라)** 소년원 수용 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등 교육·치료 인프라 개선
 - * (예시) 스터디카페형 공부방 설치로 자기주도형 학습 여건 조성
 - ** (예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 소년원 파견
 - **(프로그램)** 개별특성 맞춤형 교육 강화* 및 가족관계 회복 지원** 등을 통한 재범 방지
 - * (예시) 발달장애·정신질환 소년원학생을 위한 특수반 운영
 - ** (예시) 가족캠프, 가정관 면회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3. 정책 주체로서 아동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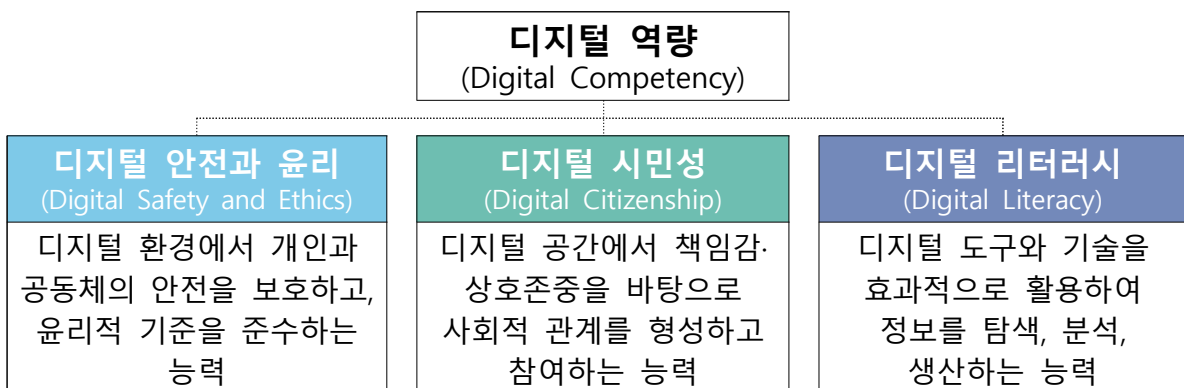
1 아동의 정책 참여 효과성 제고

-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아동정책 영향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 내실화 및 개선사항 권고 등 평가·환류 체계 재정비 추진^[강화]
 - * 영향평가 추진체계 정비 및 평가대상 정책 확대 시행,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권고, 우수사례 발표·시상 등 영향평가 환류체계 정비 추진
-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다양한 아동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정책 참여의 장 확대 추진
 - **(거버넌스 참여)** 아동 관련 중앙·지역 회의체에 아동 당사자 위원 선임 및 지역단위 아동 참여기구 활성화 추진
 - * (예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 당사자 참여 의무화 등

2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 역량 강화

- **(아동 눈높이 정보제공)** 주요 정책·제도 시행 시,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위해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신규]
-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체계(‘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마련 및 고도화^[강화]
 - 생애주기별(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강화 및 ‘함께학교’ 플랫폼 통해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 접근성 제고

<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안) >



- **(체험·참여형 인성교육 강화)**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 지원^{강화}

* (예시) 개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활용

【시·도교육청 체험·참여형 인성교육 사례】

- (서울)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 및 「아동친화학교」 운영
- (인천) 「제2회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 운영을 통해 '따뜻한 말' 사용 확산
- (광주) 체험중심 인성교육 지역연계 프로그램 『체인지』 운영
- (경기)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74교) 운영
- (제주)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운영(21교), 미래시대 실천학교 운영(20교)

- **(기후위기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확대 및 참여 중심 교육 운영사례* 개발·확산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강화

* (예시) 녹색생활 실천학교 등 실천기회 확대, 학교 환경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VI 기대 효과

◆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 돌봄·양육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아동 삶의 만족도: ('23) 7.14점 → ('29) 7.8점, ▲여가활용 만족도: ('23) 50.3% → ('29) 55%

-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은 줄이고,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는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나홀로아동 보호 등

-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휴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소아 의료체계 강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육활동 내실화, 공교육 내실화 등

◆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중심이 되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보호율: ('24) 46% → ('29) 52%, ▲재학대율: ('24) 8.7% → ('29) 8.1%

- 가정형 보호 원칙하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신속히 발견되어 필요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공적 입양체계 안착, 가정형 보호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 등

- 다양한 배경의 위기·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이 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 아동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24) 84.1% → ('29) 86%,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자체 개선이행율: ('24) 83.6% → ('29) 90%

-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정책의 중심이 되고, 아동 권익이 국제적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

-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아동 눈높이 정보 제공, 아동친화적 인식개선 지원 등

붙임1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 **(기본방향)**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해, 아동(가족) 정책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재원 투입 고려
 - 1.5% 수준('20)인 아동(가족) 대상 공공사회지출을 장기적으로 확대, '29년까지 OECD 평균 수준(2.1%, '15년)에 도달 노력

< GDP 대비 아동(가족) 대상 공공사회지출 현황 >

(단위 :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GDP 대비 가족(아동) 대상 공공사회지출	한국	0.7	1.1	<u>1.5</u>
	OECD 평균	2.2	<u>2.1</u>	-

* 출처 : OECD

- **(재정투입 계획)**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총 소요예산(78개 과제에 한함)은 약 35.7조원 수준(잠정치)

< 재정투입 계획(안) >

(단위 : 억원)

전략	총계	2025	2026 ~ 2029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320,389	53,743	266,646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36,807	6,888	29,919
아동의 권익 증진과 정책 참여 활성화	212	51	161
계	357,408	60,682	296,726

* 연차별 투입계획(안)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조달방안)** 매년 각 부처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안 마련 시 우선적으로 반영 등 검토

붙임2

주요 법령 제·개정 관련 필요사항

분야	과 제 명	법 령 명	구분	소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	복지부
	부모교육 내실화	아동수당법등	개정	복지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노동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성평등부
	지역돌봄체계 개편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	디지털포용법	개정	과기정통부
	건강검진 일원화	학교보건법	개정	교육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가정형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후견제도 개선	아동복지법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복지부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재학대 방지 및 회복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복지부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아동의 법적 지위 개선 (사법 절차 개선)	가사소송법	개정	법무부
	아동의 법적 지위 개선 (상소 제한 철폐)	군사법원법	개정	국방부

전략	중점 과제	정책과제		담당부서(기관) (협조부서)
		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기본 돌봄· 양육 환경 구현	아동 양육·자립 기반 강화	○ 아동수당 확대	복지부
			○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
			○ 돌봄시간 확보	노동부
			-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 유연근무 활성화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 부모교육 내실화	복지부
			○ 체험형 부모교육 공간 조성	복지부
		나홀로아동 등 아동 돌봄 강화	○ 나홀로아동 보호	복지부
			-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	
			- 아동 방임기준 마련	성평등부
			○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지역 돌봄체계 개선	○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부
	○ 방과 후 마을돌봄체계 개편		복지부	
	아동의 신체· 정신 건강 증진	아동의 마음건강 지지	○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	과기정통부·복지부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육부
			○ 위기청소년 지원	성평등부
			○ 자살 예방 강화	복지부·교육부
		아동의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	○ 체육활동 활성화	교육부
			○ 체육 인프라 확충	교육부
			○ 소아비만 예방	복지부
○ 건강검진 일원화			교육부	
○ 예방접종 지원 확대			질병청	

전략	중점 과제	정책과제		담당부서(기관) (협조부서)	
		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아동이 마음껏 놀고 꿈꾸는 환경 조성	소아 의료접근성 제고		○ 미숙아 지원 강화	복지부	
			○ 소아 의료체계 강화	복지부	
			- 진료 인프라 확대		
			- 소아의료 보상 강화		
	공교육 내실화 및 휴식권 보장 강화		○ 공교육 내실화	교육부	
			○ 놀이정책 거버넌스 운영	복지부	
			○ 아동정책 내 휴식권 보장	복지부	
			○ 아동 심·놀이 인식개선	복지부	
	아동의 놀이·여가·문화 접근성 개선		○ 문화프로그램 지원	문체부	
			○ 아동친화 문화시설 운영	문체부	
			○ 아동 여가·놀이시설	성평등부	
	디지털 세상 속, 아동의 안전한 삶 보장		○ 유해정보 차단·예방	방미통위	
			○ 온라인성착취 선제대응	성평등부	
			○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부	
			○ 온라인 모니터링	성평등부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가정 중심의 아동 보호	공적 입양체계 안착	○ 공적 입양체계 안착	복지부	
		가정위탁 활성화	○ 가정위탁 지원체계 국가 책임성 강화	복지부	
			○ 위탁가정을 新가족형태로 인정	복지부	
		후견제도 개선 및 원가정 복귀 지원	○ 아동의 의사결정권 보장	복지부	
			○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시설 입소아동 권익증진		○ 시설 고도화	복지부
				○ 시설아동 권익증진	복지부
				○ 시설 특수육구아동 지원	복지부
				○ 시설안전 강화	복지부

전략	중점 과제	정책과제		담당부서(기관) (협조부서)
		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 위기아동 조기발견	복지부
			○ 위기아동 조기지원	복지부
			○ 재학대 방지 및 회복 지원	복지부
			○ 아동학대 환류체계 구축	복지부
	취약 아동 맞춤형 지원	위기 유형별 아동 맞춤형 지원 확대	○ 경제적 취약아동 지원	복지부
			○ 장애아동 지원 강화	복지부
			○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	교육부
		취약가구 아동 지원 및 격차 해소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성평등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 학습·정서·역량강화 지원	
			○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성평등부
		○ 미등록 외국인 아동	법무부	
		○ 수용자 자녀 지원	법무부·복지부	
		취약· 보호 아동 자립 역량 강화	취약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 자산형성 지원 강화
	○ 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고위험군 맞춤형 지원	복지부
			○ 경제적 자립 지원	복지부
			○ 자립역량 강화 지원	복지부
			○ 취업 지원 강화	복지부
	아동 보호 인프라 내실화	아동복지체계 강화 및 지역 격차 해소	○ 아동복지체계 강화	복지부
○ 지역 아동보호대책 강화			복지부	
아동정보 통합관리 구축		○ 차세대 아동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복지부	
		○ 돌봄·보육·교육 서비스 연계	교육부	

전략	중점 과제	정책과제		담당부서(기관) (협조부서)
		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아동 존중 사회 기반 마련	법적 체계 정비 및 거버넌스 활성화	○ 아동기본법 제정	복지부
			○ 아동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복지부
		지역에서의 아동 친화 환경조성	○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복지부
			○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복지부
		사회적 인식 개선	○ 아동친화적 인식개선 지원	-
			- 매체·콘텐츠 모니터링	방미통위·문체부
	- 대국민 홍보 강화		복지부	
	일상 생활 에서의 아동 권익 보호	아동의 법적 지위 개선	○ 제3선택의정서 비준	복지부
			○ 법적 지위 개선	-
			- 사법 절차 개선	법무부
			- 행정 절차 개선	복지부
		- 상소 제한 철회	국방부	
		다양한 여건의 아동 권익 보호	○ 일하는 아동 지원	노동부
	○ 보호소년 지원		법무부	
	정책 주체 로서 아동 참여 확대	아동의 정책 참여 효과성 제고	○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복지부
			○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복지부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개선	○ 아동 눈높이 정보 제공	복지부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부
			○ 체험참여형 인성교육 강화	교육부
			○ 기후위기 교육	환경부

별첨1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안) (아동빈곤예방법 제6조)

◆ (빈곤아동 기본계획) 아동빈곤예방법 제6조에 따른 수립 의무

⇒ 아동정책 전반의 중장기 계획인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되, 빈곤아동 특성*에 적합한 사항 별도 도출

* 보호대상아동 아동보호체계,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자산형성 등

1 빈곤아동 제도적 개념 및 현황

□ (빈곤아동 개념) 현실에서 아동 빈곤보다는 취약계층 가구의 아동으로 인식, 대표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의 아동

○ (법률상 개념) 「아동빈곤예방법*」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법 제3조제3호) "빈곤아동"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빈곤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각호 >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 (현황) 최소 40만명 이상 추정 ('23년, 0~18세 전체아동 약 707만명 중 5%)

○ (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 가구 아동) 약 35만명

* (보호대상아동) 약 2.1만명, (기초수급·차상위 아동) 약 36만명 ('24.12월 기준)

○ (한부모·다문화가족 아동) 5만명 이상 (저소득 가구와 중복 고려)

* (0~18세 한부모가정 아동) 21.6만명 (성평등부, '23년)

** (0~18세 다문화가정 아동) 30.1만명 (행안부, '23년)

2 빈곤아동 지원정책 추진방향

1. 보호대상아동 : 가족자원 지원 강화

- **(가정형 보호 확대)** 가정 형태에 가장 가까운 보호가 아동에게 최선
→ 입양 국가체계화에 발맞춰 **가정위탁 국가사업화*** 추진
 - * '25년 기준, 지방이양사업으로 18개 시·도 가정위탁센터 운영 → 국가 단위 위탁 부모 모집·관리, 재정지원, 시·도 조정역할 및 시·도-시·군·구 간 역할분담 명확화
-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전반 개선)** 시설장 및 위탁부모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대리권은 친권 공백 시 **자동부여** 방향으로 개편 추진
 - * '25년 기준, 「시설미성년후견법」 상 임시후견인에게 허용되는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휴대폰) 이용, ▲수술·입원 등 의료 이용, ▲입·전학 등 학적관리 등 사유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2. 취약계층 아동 : 기회의 불평등 완화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납입 강화)** 아동 자립 시 미래도약 기반이 되는 자산 지원으로, **중장기 납입 강화*** 및 **후원금 지원 활성화**
 - * 부모·아동 대상 금융경제 교육, 정책금리 강화 및 중도인출 완화 등 제도개선
- **(마을돌봄시설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 지역아동센터 저소득가구 아동 50% 이상 우선배정 방식에서 나아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 검토***
 - *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브랜드 통합도 추진 검토 : 지아센-다돌 구분이 아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질에 따라 이용자 선택 유인
-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26.3월)**
 - **(전담관리)** 시·군·구 단위 '드림스타트' 사업 통해 사례관리
 - * (직권신청 활성화) 학교 선생님 등이 의심사례 발굴 시, 시·군·구 전담공무원에 의뢰하는 체계 확립 → 읍면동 기본 확인조사 거쳐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
- **(시설 장애아동 지원 강화)** 시설 기능전환과 병행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아동 특화서비스 이용·연계 강화 및 지속 사례관리 체계 확립

3 주요 추진과제

가정형 보호 확대

1. 가정위탁 국가사업화

- (목표) 국가 단위 위탁부모 지원군(풀) 모집·관리체계 구축
 - 기존 시·도가정위탁센터-시·군·구 담당자 의존 체계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 컨트롤타워가 되어, 18개 시·도 센터 지원·관리 체계로 개선
 - 양육보조금 지역 간 형평성 제고
- (방식) 시·도 조정·개입역할 부여 및 책임성 제고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신규 위탁부모 모집 및 관리업무 시·도 권한·책임 부여
 - * (현재) 지방 예산제약 및 지역편차 → (개선) 국가단위 위탁부모 모집, 관리, 재정지원
 - 위탁부모 모집책정 등 업무지원은 이전과 같이 센터에서 하되, 시·군·구 간 조정, 책정 등 행정책임은 시·도의 역할로 명시
 - 현재 추진 중인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인천시)과 연계, 초기보호 행정공백 보완 및 현행 시·군·구 독자 결정체계 개선

2.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제도 개편

- (목표)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전반 개선 (법 개정안 마련 검토)
 - (방향) 시·군·구 사례결정위 보호결정 시, 시설장 및 위탁부모에 '일상양육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고, 지자체 후견권 강화
 - * 재산상속 및 취득 등 법적위험이 높은 의사결정은 여전히 공공후견인이 부담하되, 학교 전·출입, 휴대폰 개통 등 일상행위 또는 아동에 유리함이 분명한 행위는 위탁부모에 '일상양육 법정대리권' 부여 필요

아동 수 감소, 특수육구 증가 등 대응

3. 시설 기능전환

- (목표) 아동 정원 수에 기반한 예산 지원기준 20년간 지속. 저출생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로드맵 제시('26.上 마련 목표)

* 아동양육시설, 마을돌봄시설 등 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 변경 시급

4. 보호사유 발생초기 보호공백 개선 및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지원

- (현황) 초기보호 단계 필수서비스 제공 미흡, 일시보호 장기화 및 사례결정위 결정 시에도 시·군·구 내 협소한 보호자원만 활용

< 참고: 시·군·구 사례결정위 운영 사례 >

- ▶ (현황)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일시보호 및 사례결정위 개최 담당
- ▶ (문제) 광역도 내 폭넓은 자원을 두고 아동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선택되기보다는 사례결정위 개최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 협소한 자원 내의 행정편의적 선택

* 시설보호는 대부분 사례결정위 담당 관할 시·군·구 내 시설로 관행화

- (개선방향) 광역 단위의 보호자원* 상시 모니터링 및 공유를 통해, 초기보호 및 중장기 보호조치 시, 시군구 결정 지원

*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 (시·도 조정역할 지원) 복수의 시·군·구가 연관된 사례의 경우,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시, 시·도 개입 지원
- (원가정 복귀) 중장기 보호조치 결정을 준비하면서도, 원가정 복귀 가능성 있는 아동 대상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그룹홈, 양육시설 등 입소 아동 대상 자조모임, 멘토, 장학사업 등 활성화

보호대상아동 시설 보호환경 개선

5. 보호대상아동 공적증명서 낙인효과 예방

- (현황)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서류 발급시 보호대상아동임이 노출
 - 자립준비청년으로 독립 후에도 여전히 기록 잔존 → 아동에게 지속적인 낙인효과 원인으로 작용
- (개선방향) 「가족관계등록법령」* 등 정비 (법원행정처 협조)

6. 지자체 시설 관리감독 권한 법적근거 강화

- (현황) 아동복지법 상 포괄적 근거만 존재, 지방이양사업으로 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 책임행정 어려움
- (개선방향) 「시설미성년후견법」 전면개정 추진
 - (목표) 아동양육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제도 개편 방향에 따른 지자체 후견권 강화 추진*

* 아동-친부모-시설 종사자 간 권리 및 책임관계 재정립 등

< 참고: 시설미성년후견법 연혁 >

- (1961년 제정) 부모가 모두 사망한 '고아'만 대상
 - * (공공시설) 시설장이 후견인 직무 대행, (사설시설) 광역지자체장이 지정
- (1997년 개정) '고아'가 아닌 보호시설 아동도 법원 허가로 후견인 지정 가능
- (2003년 개정)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지자체장의 후견인 지정취소 청구권 도입
- (2021년 개정)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 범위 내 임시 후견인 규정 도입

- (추진일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발의(~'26.上), '26년까지 입법완료 목표*

* 위탁부모의 법적권한 강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병행 통과 추진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지원 강화

7. 아동발달지원계좌 납입률 제고

□ (현황) '07년 도입 이후 대상자 지속 확대 중

* 대상 확대 : ('07) 보호대상아동 → ('11) 기초생활수급가구 → ('25) 차상위계층 아동
가입 대상(연령) 확대 : ('11) 12세 → ('16) 12~13세 → ('18) 12~17세 → ('24) 0~17세

□ (문제점) 빈곤(기초수급)으로 생활고를 무릎쓰고 아동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본인부담금 몫(월 최대 5만원)을 지속 적립하는데 애로 예측

□ (개선방안)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을
CDA 매칭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적립 심리적 부담 완화) 주적립자 부모 대상 제도 효과성 및 체계적
자산관리 교육 국가사업화, 민간 후원자 발굴 및 1:1 매칭 강화 병행

< 참고: CDA 가입아동 및 가입률, 적립률 현황 >

(단위: 명, %)

연도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대상아동	가입아동	가입률	적립률	대상아동	가입아동	가입률	적립률
2022	27,952	23,887	85.5	93.7	52,530	40,904	77.9	83.1
2023	27,159	23,334	85.9	91	60,688	39,866	65.7	82.1
2024	22,802	22,669	99.4	94.8	182,875	136,984	74.9	83.6

○ (추진일정)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입자 확대('25) → 적립률 제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26) → 개선방안 적용('27~)

8.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개편

□ (현황) '24년말 기준, 지역아동센터는 4,206개소, 종사자 12,717명
배치, 이용 아동은 110,838명이며, 이 중 63.8%가 우선돌봄아동*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가구 아동

계 (단위:명)	우선돌봄아동					일반아동	
	수급자 및 차상위	다문화 및 장애인	조손 및 한부모	다자녀	돌봄특례 등	맞벌이 가정	기타 일반아동
110,838 (100%)	20,882 (18.8%)	20,289 (18.3%)	11,668 (10.5%)	4,624 (4.2%)	13,251 (12.0%)	7,204 (6.5%)	32,920 (29.7%)

- (문제점)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기에도 정책로드맵 부재
 - (다부처로 파편화된 돌봄체계*) 관리기제 효율성 저해
 - * 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교육부늘봄학교 / 성평등부방과후아카데미
 - (취약계층 아동 이용시설 낙인효과*) 이용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아동 및 부모의 접근성을 낮추는 원인
 - * 현재 정원 50% 이상 우선돌봄아동으로 규정
- (개선방안)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브랜드 일원화 추진 → 지역아동센터 낙인효과 해소 및 일반아동 이용 촉진
 - (방향) 돌봄이 필요한 아동 누구나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낙인효과 해소) 저소득 가구 50% 이상 우선배정 방식 → 저소득 가구 이용자가 많은 경우 재정 인센티브 부여 방식 전환 검토
 - * 단, 취약계층 아동 이용 보장하고, 지역·아동 특성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강화
 - (지속가능성 제고) 시설 유형, 도-농어촌, 수도권-지방 등 시설 여건을 고려한 인건비 기준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 마련
 - (추진일정) 마을돌봄시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마련 ('26.上) → 로드맵 기반 단계적 이행 추진(~'29년)

9. 6~12세 가족돌봄아동 사례관리 강화

- (현황) 6~12세 전국 약 13,544명* 추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25)
 - * ①아픈가족 ②아동 돌봄부담 ③다른 장년가구원이 없거나 평소 일상생활 시 부재
- (문제점) 아동 성장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가 필요하나 사각지대 위치

< 참고: 인천 아동 화재 사건 >

- (가구상황) 아픈 아버지는 신장 투석 외래진료, 어머니는 임시직 소득활동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11살 아이가 홀로 있던 중 화재 발생으로 안타까운 사고
- (문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통해 위기가구 징후가 계속 발견되었으나 母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탈락, 한부모 등 별도의 법정 지원 대상자 개념에 해당 안됨. 아동은 학교 하교 후 지속 방치 정황

□ (개선방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제정('26.3월 시행 예정), 차질없는 법 시행 통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사각지대 해소

* 시범사업은 13~34세가 대상이나, 제정법은 34세 이하 아동 및 청년 모두 포함

○ 소득재산 확인 없이, 아픈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구상황 만으로 법정 사례관리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 가능, 사례관리 시행

○ 일부 고난이도 대상자*는 광역 단위 전담기관 직접 사례관리하되, 지역 내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 통해 전담 사례관리 강화

* 제정법에 따른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시, 정기적 관리와 함께 19조 특례 적용 (장기요양 시설급여, 사회서비스 본인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및 공공임대 법정 우선 대상자 등)

10. 보호대상아동 중 장애아동 보호체계 확립

□ (현황) 보호대상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거주·생활시설 모두,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시설은 없음

* ('16) 2.9% → ('18) 3.3% → ('20) 4.2%,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 시설 유형별 장애아동 비율('20년 기준) >

시설유형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비율	7.7%	9.7%	12.4%

○ 보호대상 장애아동은 현실적으로 가정형 양육(가정복귀, 입양, 위탁) 지원 실효성이 낮음 → 특화 서비스 연계 및 접근성 확대 방안 필요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있으나, 시설 장애아동과 일반가구 장애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발달 장애인 대상 초점

□ (개선방향) 시설 장애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 확대하고, 시설 장애아동도 지역사회 장애아동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체계 구축

* 시설 장애아동 대상 별도의 특화 보호시설 법제화는 신중접근 입장

○ 아동양육시설 생활 가능한 경증장애인 위한 전문성 있는 종사자 추가배치 확대, 타시설 등 필요한 아동을 위한 생활·거주시설 대상 서비스 지원 강화

11.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25.7월 시행), 저소득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 안정적 양육을 돕고, 학습지원, 정서·역량 강화 지원
 -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양육비 지급 및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완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복지급여 지원
 - (아동 지원·역량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가족센터 확대 및 정서·역량강화* 지원
 - * 사례관리 전담 인력의 보수 교육 강화, 체험·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 (다문화가족) 다문화 아동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정서 지원
 - (양육·발달 및 교육 지원 강화) 임신·출산, 영·유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및 언어교육 지원, 가족센터를 통한 학령기별 기초학습 및 진로설계 지원, 이중언어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제도 기반 정비

- (아동빈곤예방방법 개정 추진) 빈곤아동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됨을 명시(26~, 정부입법 검토)
 - * 아동정책조정위 내 실무분과 위원회로 거버넌스 개편이 정책연계 등 효율적

4 기대효과

- 약 40만 빈곤아동 가족지원 격차 해소, 취약아동의 미래 자립의지 고취를 통한 사회 역동성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반 확충

1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 개요

- (배경) 아동복지법 제8조에 근거,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에 따라 수립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 (추진경과)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평가 통합설명회 및 워크숍, 컨설팅('24.1~3월),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취합(~'24.2월), 평가('24.4~9월)
- (평가내용) 부처·지자체별 '23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①계획 수립 적절성, ②이행의 충실성, ③성과달성도 평가

□ 평가 결과

< 중앙부처 >

- ①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②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④코로나19 대응 등 4개 정책 영역을 지표별로 평가
- ③국가책임 강화, ②발달지원, ①아동권리 실현, ④코로나19 대응 순으로 고득점

< 기본계획 4대 정책영역별 평가 결과 >

기본계획 4대 영역	점수 (소속 과제별 평균, 점)				주요 성과
	총점 (100)	수립 (10)	이행 (30)	성과 (60)	
① 권리주체 아동 권리 실현	68.8	9.1	24.1	35.6	• 주요 아동계획 대상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 아동정책으로 확대
②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	73.2	9.4	24.7	39.1	• 유아동·부모 등 대상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③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74.4	9.7	22.8	41.8	•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 및 전용공간 확충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55.8	9.1	22.9	23.8	• 부모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제도화 추진

< 참고 : 중앙부처 평가 세부지표 >

지표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30점)	성과달성도(60점)
세부 지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5) ·사업내용, 추진전략의 적절성(5)	·계획 이행의 충실성(15) ·예산집행률(15)	·성과지표의 타당성(15)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15) ·성과지표 목표치의 달성정도(30)

< 지방자치단체 >

○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도 단위에서는 강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광역시와 도 구분하여 평가)

광역시·특별시	평가지표 및 점수				도	평가지표 및 점수			
	계획 (10)	이행 (20)	성과 (70)	계 (100)		계획 (10)	이행 (20)	성과 (70)	계 (100)
서울	10	13.5	52.3	75.8	경기	9	13.8	56.0	78.8
부산	9	15.2	55.6	79.8	강원	10	14.2	59.2	83.4
대구	9	15.0	53.2	77.2	충북	9	12.2	45.7	66.9
인천	9	13.3	57.2	79.5	충남	10	15.7	48.4	74.1
광주	9	14.0	48.4	71.4	전북	9	15.0	53.2	77.2
대전	8	13.0	50.3	71.3	전남	9	14.7	51.6	75.3
울산	9	14.0	45.6	68.6	경북	9	12.7	49.2	70.9
세종	7	16.5	52.9	76.4	경남	8	11.8	36.9	56.7
					제주	9	12.0	46.2	67.2

* 지자체별 평가 점수는 지표별(계획수립의 적절성, 이행의 충실성, 성과달성도) 점수의 합계

< 참고 : 지방자치단체 평가 세부지표 >

지표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30점)	성과달성도(60점)
세부 지표	①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의 적절성 (5) ② 영역별 사업 구성의 적합성 (5)	① 관계기관과 협업 관계 구축정도 (10) ② 추진계획 이행의 충실성 (10)	① 아동권리 실현 추진체계 구축 정도 (10) ② 생활 속 아동의 참여권 보장 정도 (10) ③ 아동친화적인 놀이·여가 환경 조성 정도(5) ④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정도(5) ⑤ 공적 아동보호체계구축 정도(20) ⑥ 가정위탁 활성화 정도(5) ⑦ 온종일 돌봄 이용률(5) ⑧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정도(5) ⑨ 지자체 특화사업 자율지표(5)

2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 개요

- (배경) 아동복지법 제8조에 근거,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에 따라 수립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 (추진경과)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평가 통합설명회('25.1월),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취합(~'25.3월), 평가 실시('25.4~9월)
- (평가내용) 부처·지자체별 '24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①계획수립 적절성, ②이행의 충실성, ③성과달성도 평가

□ 평가 결과

< 중앙부처 >

- ①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②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④코로나19 대응 등 4개 정책 영역을 지표별로 평가
 - ③국가책임 강화, ②발달지원, ④코로나19 대응, ①아동권리 실현 순으로 고득점

< 기본계획 4대 정책영역별 평가 결과 >

기본계획 4대 영역	점수 (소속 과제별 평균, 점)				주요 성과
	총점 (100)	수립 (10)	이행 (30)	성과 (60)	
①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65.5	8.4	22.2	34.9	· 아동 공적등록제도(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및 시행('24.7월)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78.2	9.4	24.3	44.4	· 지역사회 아동 놀이접근성 개선 및 전국 17개 시·도 청년마음건강센터 ^{17개소} 운영
③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88.0	9.7	23.5	54.8	·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확충 ^{178개소} 및 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로 공백없는 돌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66.8	8.7	24.2	34.0	·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비대면 아동상담 위한 '아동 AI 서포터즈' 시범 보급

< 참고 : 중앙부처 평가 세부지표 >

지표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30점)	성과달성도(60점)
세부 지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5) ·사업내용, 추진전략의 적절성(5)	·계획 이행의 충실성(15) ·예산집행률(15)	·성과지표의 타당성(15)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15) ·성과지표 목표치의 달성정도(30)

< 지방자치단체 >

- 광역지자체에서 인천, 다음으로 부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광역시·도 구분없이 평가 실시)

광역시· 특별시	평가지표 및 점수				도	평가지표 및 점수			
	계획 (10)	이행 (20)	성과 (70)	계 (100)		계획 (10)	이행 (20)	성과 (70)	계 (100)
서울	7.0	13.0	51.3	71.3	경기	10.0	13.8	54.4	78.2
부산	10.0	15.8	54.4	80.2	강원	9.0	12.5	54.3	75.8
대구	9.0	12.8	46.6	68.4	충북	7.0	12.7	46.6	66.3
인천	10.0	13.8	58.9	82.7	충남	9.0	13.8	52.8	75.6
광주	8.0	12.5	47.9	68.4	전북	10.0	13.3	50.4	73.7
대전	8.0	12.6	45.1	65.7	전남	9.0	13.0	49.0	71.0
울산	8.0	13.0	50.6	71.6	경북	9.0	13.5	50.1	72.6
세종	7.0	12.7	53.9	73.6	경남	7.0	12.5	39.1	58.6
					제주	9.0	10.0	42.3	61.3

* 지자체별 평가 점수는 지표별(계획수립의 적절성, 이행의 충실성, 성과달성도) 점수의 합계

< 참고 : 지방자치단체 평가 세부지표 >

지표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30점)	성과달성도(60점)
세부 지표	①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의 적절성 (5) ② 영역별 사업 구성의 적합성 (5)	① 관계기관과 협업 관계 구축정도 (10) ② 추진계획 이행의 충실성 (10)	① 아동권리 실현 추진체계 구축 정도 (10) ② 생활 속 아동의 참여권 보장 정도 (10) ③ 아동친화적인 놀이·여가 환경 조성 정도(5) ④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정도(5) ⑤ 공적 아동보호체계구축 정도(20) ⑥ 가정위탁 활성화 정도(5) ⑦ 온종일 돌봄 이용률(5) ⑧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정도(5) ⑨ 지자체 특화사업 자율지표(5)